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디지털
경매장 구성을 위한 제도화 방안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란희

2022년 6월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디지털 경매장 구성을 위한 제도화 방안

지도교수 김 정 훈 황 경 수

박 란 희

이 논문을 경영학(문화예술경영)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박란희의 경영학(문화예술경영)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 설 우	Ⓜ
위 원	김 정 훈	Ⓜ
위 원	황 경 수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2022년 6월

Institutionalization of Art and Culture Digital Auction in Jeju

Ran-Hee Park

(Supervised by professor Junghoon Kim & Kyung Soo Hw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Master's degree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in Business Administration

June. 202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Seolwoo Park, Prof.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Junghoon Kim

Kyung Soo Hwang

June. 2022

Department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 문 초 록>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디지털 경매장 구성을 위한 제도화 방안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박 란 희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디지털 경매장 구성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2019년부터 COVID-19라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되자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문화가 빠르게 확산 되었다.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기존의 문화예술 활동 또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었고,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가 주목받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도 이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규제자유특구사업과 제주 문화예술의 섬, 국제예술특구 조성사업 등에 심혈을 기울이며 타 지역과 경쟁하였다. 문화예술 디지털 경매장 구성을 위해 이러한 선제적인 노력을 밑거름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제도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제 3의 권위적인 기구가 있어야 한다. 디지털 경매장에 관한 공공 기관이나 법인 단체를 설립하여야 하지만, 문화예술의 특성상 정부 주도의 관리와 운영보다는 팔길이 원칙에 따른 기구로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정부나 문화예술인으로서가 아니라, 기관의 방향성에 간섭 받지 않고 독립적 운영권을 가진 공신력 있는 제 3의 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해당 기구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특별법이나 특례가 있는 자치도시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한 디지털 경매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그 조례에 따라 지방정부 즉,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도화된 제3의 기구를 지원하고 법률을 제정한다. 제주도는 디지털 경매장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중앙부처와는 다르게 독자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디지털 경매에 관한 별도의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 디지털 경매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한민국 내에서의 내수용 디지털 경매장이 아닌 전 세계 미술시장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법인 단체, 재단, 행정 혹은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처럼 세부적인 분류를 적용한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의 디지털 경매 플랫폼에 대한 법규를 별도로 제정하여 문화예술의 경매에 대한 안정화와 경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투명한 절차와 보증, 위작이나 가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경매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행정 차원에서 디지털 경매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플랫폼 마련만이 아니라,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는 창작자가 있어야 한다. 그 창작자를 위한 지원방안 역시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작품을 제작하고 디지털 경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에 관한 지원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각각 개별사업이던 규제자유특구사업과 제주 문화예술의 섬, 국제예술특구 조성사업 등은 한 곳에 어우러져 복합 사업으로서 새로이 연구되어야 한다.

앞서 논의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법규가 있는 도시이며, 국제자유도시로써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사업적 교류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제주지역의 규제자유특구사업과 제주 문화예술의 섬, 국제예술특구 조성사업이 어우러지면 창작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유통시장이 마련된다. 새로운 신기술을 위한 인프라가 조성되며, 이에 따른 기술개발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는 제주도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직업군과 도시를 대표하는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주요어 : 문화예술, 디지털 경매장, NFT, 블록체인, 제주특별자치도

ABSTRACT

Institutionalization of Art and Culture Digital Auction in Jeju

This study is to present an institutionalization plan for the formation of a digital auction house for culture and arts in Jeju. Since 2019, the online non fact-to-face culture has rapidly spread as external activities have been restricted due to the global pandemic COVID-19. Existing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which were offline-oriented, were also rapidly reorganized into online-oriented activities in lin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blockchain, NFT, and metaverse attracted attention as core technologies that lead these changes. Since 2002,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competed with other regions by focusing on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International Free Cities.

In order to form a digital auction house for culture and arts, the following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can be proposed using such preemptive efforts as a foundation. First, there should be a reliable third authority. Public institutions or corporate organizations for digital auctions should be established, but due to the nature of culture and arts, support as an organization based on ALP(arm's length principle) rather than government-led management and operation is needed. There is a need for a reputable(credible) third organization with independent management rights without being interfered with the direction of the institution, not entirely as a government or cultural artist. Second, ordinances with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be enacted to prepare the basis for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Since Jeju Island is a

self-governing city with special acts and municipal ordinance, legal action can be taken if a problem arises at a digital auction house using virtual currency or blockchain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nce, local governments, that i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upport a third organization institutionalized and enact laws. Jeju Island plays an independent and leading role unlike the central government by enacting ordinances to create a digital auction house. Third, it is necessary to enact laws and regulations for digital auctions separately.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digital auctions, it is not just a digital auction house for domestic use in Korea, but to create conditions such a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liable corporate organizations, foundations, administrations, or companies for the art market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act laws that apply detailed classifications like overseas, stabilize cultural and artistic auctions, raise public interest in auctions, transparent procedures and guarantees, and specific legislation on forgery or fake products. Fourth,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e needed to create a digital auction house. In order to construct a digital auction house at the administrative level, there should be a creator who uses the platform as well as a spatial platform. Support measures for the creator are also needed.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support virtual currency that can be used at digital auctions after producing digital works. Therefore, the Regulatory Freedom Special Zone Project, Jeju Culture and Arts and the International Arts Special Zone Creation Project, which were previously individual projects, should be combined into one and newly studied project.

Based on this study discussed abo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erived. Jeju Island is a city with self-governing laws under the Jeju Special Act, and as an international free city, it has good conditions for securing various talents and business exchanges with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When the Jeju Special Zone Project for Regulatory Freedom, Jeju Island for Culture and Arts, and the International Special Zone for Arts are combined, a space for creators to

work and a distribution market will be prepared accordingly. In addition, infrastructure for new technologies will be created,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education will be provided accordingly, furthermore, it can develop into a group of new job and a new industry representing the city for the sustainable future of Jeju residents.

Keywords: Culture and Arts, Digital Auction House, NFT, Blockcha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II.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4
1. 문화예술과 디지털 경매	4
1) 디지털 경매의 조직위상	11
2) 디지털 경매의 법적 근거	12
3) 디지털 경매의 정부의 지원체계	13
2. 디지털 경매와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문화예술시장 관련 선행연구	15
1) 블록체인기술이 접목된 디지털경매시장의 조직위상 관련 선행연구	15
2) 블록체인기술이 접목된 디지털경매시장의 법적근거 관련 선행연구	17
3) 관련 선행연구분석을 통한 본 논문의 위치와 차별성	20
4) 분석의 틀	21
III. 국내·외 디지털 경매의 사례분석	23
1. 한국 (문화예술) 디지털 경매 플랫폼 분석	27
1) 한국(문화예술)디지털 경매의 조직위상	27
2) 한국(문화예술)디지털 경매의 법적 근거	30
3) 한국(문화예술)디지털 경매의 정부의 지원체계	37
2. 미국의 (문화예술)디지털 경매 플랫폼 분석	42
1) 미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의 조직위상	43
2) 미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법적 근거	45

3) 미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정부의 지원체계	49
3. 영국의 (문화예술)디지털 경매 플랫폼 분석	50
1) 영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의 조직위상	50
2) 영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법적 근거	51
3) 영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정부의 지원체계	54
4. 프랑스의 (문화예술)디지털 경매 플랫폼 분석	54
1) 프랑스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의 조직위상	55
2) 프랑스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법적 근거	56
3) 프랑스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정부의 지원체계	62
5. 중국의 (문화예술)디지털 경매 플랫폼 분석	62
1) 중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의 조직위상	63
2) 중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법적 근거	64
3) 중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정부의 지원체계	73
6. 분석결과	74
IV. 정책제언	77
1. 정책제언 제시	77
V. 결론	79
1. 연구결과 요약	79
2. 연구시사점	79
<참고문헌>	82

<표 목 차>

<표-II-1> 디지털경매와 온라인경매 비교	5
<표-II-2> 국내 미술시장의 위치	7
<표-II-3> 경매방식의 비교	9
<표-II-4>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	10
<표-II-5>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구분	14
<표-II-6> 2018~2021년 국내 미술시장 규모 예측	16
<표-II-7> 2018~2021년 국내 미술품 경매 개최	17
<표-II-8> 2018~2021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규모	17
<표-II-9> 블록체인기술과 가상화폐	18
<표-II-10> 분석의 틀	22
<표-III-1> NFT마켓플레이스 비교	26
<표-III-2>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32
<표-III-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14항	33
<표-III-4> 소득세법 개정안 제21조 26항	34
<표-III-5> 온라인 플랫폼 중계거래에 관한 법률안 발의	38
<표-III-6> Uniform Commercial Code 제 2-338조	46
<표-III-7> Prohibition False Trade Descriptions	47
<표-III-8> Uniform Commercial Code 제 2-313조	53
<표-III-9> 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제품계약일치 보증 및 제품결함 책임에 관한 법률	57

<표-III-10> Loi PACTE(기업성장법)	59
<표-III-11>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27~ 46조	65
<표-III-12>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 제 10조~ 24조	70
<표-III-13> 5개국 비교표	76

<그림 목 차>

[그림-II-1] 문화예술과 온라인경매의 결합	4
[그림-II-2] 미술시장의 구분	8
[그림-III-1] Evolution of global auction turnover(2021년)	23
[그림-III-2] Evolution of the Art Market(2021년)	24
[그림-III-3] WHERE ARE THEY BUYING NFTS?	25
[그림-III-4] 2021~2022년 반기별 국내 미술품 경매사 낙찰 규모	28

I . 서론

1. 연구배경

2022년의 주요 쟁점은 블록체인기술과 NFT, 그리고 메타버스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도 이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제주특별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규제자유특구사업과 제주 문화예술의 섬, 국제예술특구 조성사업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규제자유특구사업’은 블록체인 특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과 인프라 조성 및 블록체인 연구 및 개발(R&D), 국제교류, 활발한 블록체인 기업을 제주 유치에 위해 노력하였다. 4.3 희생자 명단을 이더리움 메인넷에 제주 소셜 벤처기업과 여러 개발자가 모여 올리는 등 제주 내에서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 문화예술의 섬’은 2014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전 우근민 도지사임기동안 잠깐 사용했던 것을 이어받은 민선6~7기의 정책이었다. 문화·예술 공약을 큰 틀에서 1. 도민 문화 향유 확대, 2. 제주 문화 브랜드 세계화, 3. 문화·산업의 융복합화, 4.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 조성, 5. 독특한 문화 발굴 육성, 6. 종교 문화 가치 발굴, 7. 협치 시스템 구축으로 구분했다.

‘국제예술특구조성사업’은 2013년도 7월, 제주특별자치도는 베이징시 차오양구(北京 朝陽區)에 위치한 예술거리인 중국의 따산즈 예술특구 798예술구(798藝術區)를 모델로 예술가 작업실인 국제예술특구를 조성하고자 했다. 789예술구는 400여개가 넘는 화랑과 독특한 인테리어의 카페와 아트샵이, 여전히 운영중인 공장들과 함께 공존한다. (주)휘찬산업개발과 아시아예술경영협의회(공동대표 박철희) 투자계획협약(MOU)을 체결하고, 2009년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70번지 일원에 약 600억 원을 투자해 조성중인 ‘한라힐링파크’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다. 제주개발에 소요되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50만 달러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과 이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취득·등록세를 면제 받고 재산세도 10년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농지전용부담금·초지전용부담금 50% 감면과 개발 부담금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로 주어진다. 아직 미 완공된 휴양콘도미니엄 2개동 조성공사로 인하여 '한라힐링파크'의 투자진흥기구 지정 만료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다.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미술품 경매는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여, 코로나 시대에 따른 디지털 경매로 해외는 물론 국내 미술 시장도 흔들고 있다. 기존의 펀드와 채권, 주식 같은 금융상품 투자에 이어, 공동구매 플랫폼의 발달로 저작권 혹은 소유권을 구매하고, 미술작품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분할하여 소유 할 수 있음으로, 젊은 세대에서도 '아트테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아트테크란 미술(ART)과 기술(TECH)의 합성어이다. 이러한 공동구매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며, 거래과정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 등의 특수성이 보장된다. 이는 장기화된 코로나시기에 오프라인 미술 시장의 위축과는 반대로,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온라인 경매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디지털 경매장 구성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 하는 것에 있다. 다가올 미래는 기존의 IT기술과 블록체인기술의 복합으로 더 세분화된 디지털기술들이 결합될 것이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이면서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고 블록체인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 노력을 한 바가 있다. 이를 융복합적¹⁾으로 해석하면 제주도는 행정적으로 온라인디지털경매장 구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미 진행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연구목적을 도출한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을 근거하여 디지털경매장으로 문화예술섬을 구성하기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둘째, 가상화폐와 블록체인기술을 문화

1) 둘 이상의 분야가 서로 합쳐지면서 둘 이상의 효과라던가 성능이나 기능을 발휘하는 것

예술과 연결한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로 인한 전국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예술적 영향을 제주도 역시 피해 갈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욕타임즈에서 가고시안 갤러리와 더불어 다국적 글로벌 화랑인 데이비드즈위너갤러리(David Zwirner)의 오너 즈위너(1946~)는 미래가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것(arrived so much sooner)뿐”이라며 “If galleries are closed, how can we sell art? The online platform is something we have envisioned as an important part of what we do.”말했다. 본 연구에서는 “만약 화랑이 문을 닫아야만 한다면 작품을 어떻게 팔겠는가, 온라인 플랫폼이 분명 매우 중요해지리라고 예상했다”고 해석하였다. 제주도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단계를 지나, 다양한 방향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제주도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 디지털경매장 구성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여 블록체인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경매장을 도입하는데 따른 제약조건과 기대 효과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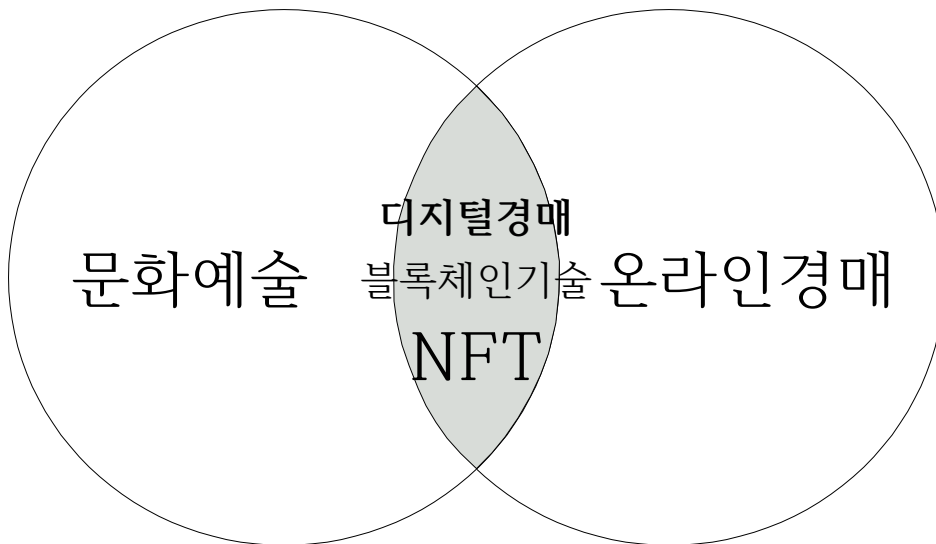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이론연구 및 문헌조사, 웹사이트 조사, 사실검증 관련 자료 수집 하였다. 온라인상의 많은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검증을 거쳤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 분석 셋째, 국내외 국가별 규범의 사례연구 및 제도적 접근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첫째, 공간적 범위로 제주도내를 설정하였고 둘째, 시간적 범위로 2022년 현시점으로 설정 셋째, 내용적 범위로는 블록체인기술, NFT, 경매, 예술품 정하였다. 종합적인 조사하기에는 방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국내·외 문헌조사와 그에 따른 결과를 전체 제도화 방안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후속 연구를 위한 지침이 될 것이다.

II. 이론 및 선행연구

1. 문화예술과 디지털경매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²⁾의 정의에서는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위키 백과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융합한 복합어이다. 문화라고만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을 융합하여 예술 활동이 있는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문화예술은 문학예술, 영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음악예술 등 예술 및 문화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II-1] 문화예술과 온라인경매의 결합



디지털경매는 사전적 정의나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장소적 의미는 온라인

2)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8769호] 제2조(정의)

의 가상의 공간상에서 진행되는 ‘어떤’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경매이며, 창작의 의미로는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목표의 수단으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미술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도구나 표현방식 중의 하나로 보면 이해가 더 쉽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예술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관습, 시대적 상황에 따른 규율과 언행 등의 생활양식과 결합된 정해지지 않은 예술적 행위라고 정의하려 한다.

디지털 경매는 인터넷 경매, 온라인 경매의 장소적 의미와 창작도구으로써의 사용의 의미 두 가지를 혼용하여 사용 하고자 한다. 디지털 경매장과 온라인경매장으로 장소적 의미로써의 두 가지는 구분이 되는데, 디지털경매장은 가상공간과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경매장이며, 온라인경매는 오프라인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상의 공간적 개념으로 디지털경매장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경매장은 디지털기술로 만든 메타버스의 공간을 활용한 경매장운영 내에 유통흐름 기록 및 보관까지 포함의 범위이며, 이베이나 옥션 등의 온라인플랫폼, 화랑 또는 자체경매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매회사 등 더 포괄적인 경매활동을 하는 곳이 온라인 경매장으로 구별 할 수 있다.

<표-II-1> 디지털경매와 온라인경매 비교

	디지털경매	온라인경매
장소적 의미	온라인 속 가상공간	오프라인이 아닌 모든 장소
창작의 의미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목표의 도구(수단), 표현방식	-
특정 디지털기술 활용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	-
결제수단	가상화폐를 포함한 실물화폐수단	

문화예술과 디지털경매의 결합으로 문화예술은 가속화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흐름에 편승하여 블록체인기술의 NFT를 활용한 창작행위와 경매플랫폼이 생성되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사전에서는 기업이 진행하거나 추진하는 혁신과정 중 하나로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가상현실,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등 방대한 디지털 기술을 하나로 통합해 전사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 말한다(장창, 2022). 국내에서도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이 디지털자산분야의 아티스트 발굴과 새로운 디지털경매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국내 상위 메이저 경매회사가 NFT관련 경매 사업 준비를 한다는 것은 새로워진 예술시장 트렌드의 가능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에서는 현대예술 애니메이터인 마리 김 작가의 ‘Missing and found(2021)’이 분산형 국내 NFT플랫폼인 디파인아트(Define Art)플랫폼(<https://define.one/>)에서 288ETH³⁾에 첫 디지털 미술품 경매로 낙찰되었다. 우리에게 생소한 문화예술 디지털경매는 그해 연말 대형유통업체인 신세계도 서울옥션의 지분 4.8%를 취득하며 NFT경매 사업에 뛰어들었다.

‘아트제주 2022 : 국내 미술시장트렌드’에서 서울옥션의 미술품경매팀 정태희 경매사는 미술계전체에서 미술시장의 위치를 확장하여 아래와 같이 <표-II-2> 국내 미술시장의 위치를 정리하였다. 상단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이며, 크게 미술관, 창작공간, 대안공간, 정부미술기관(정책과 행정), 전시기획, 학술행사와 비평가, 비엔날레, 국제미술행사이다. 하단부는 수익을 통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갤러리(화랑), 미술출판사, 언론사, 미술품경매사, 아트컨설팅, 아트딜러, 아트페어 분리되었다.

3)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자 플랫폼의 자체 통화명이다. 이더리움이 제공하는 이더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의 화폐 단위는 ETH로 표시된다. 위키백과 기여자. 이더리움 [인터넷]. 위키백과. ; 2022 2 28, 21:53 UTC [2022 5 13에 인용].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음: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D%B4%EB%8D%94%EB%A6%AC%EC%9B%80&oldid=31961147>.

<표-II-2> 국내 미술시장의 위치

큐레이터 디자이너 시설/안전 디스플레이 에듀케이터 도슨트 아트샵 홈페이지 복원/수장고 대외홍보 운영부서	기획자 시설관리 홍보/교육 작가섭외 펀드레이징 (운영자금)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지자체-문화 부	독립큐레이터 전시기획자	교수 미술비평가 평론가 저술가	행사진행 도서 출간 미디어 담당 해외업무 기획자 후원/운영
미술관	창작 대안공간	정부미술기관 (정책, 행정)	전시기획	학술/비평	비엔날레 국제미술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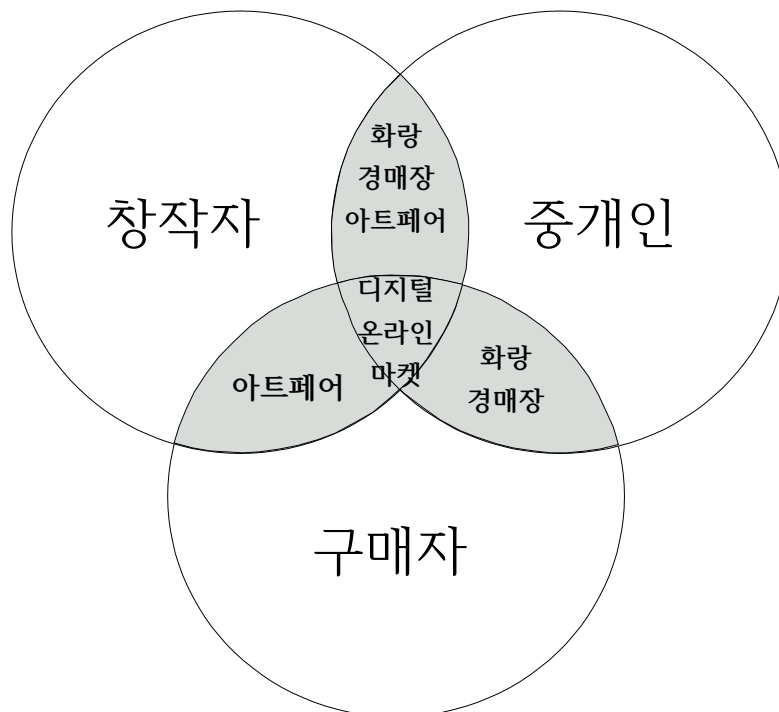
갤러리	미술출판 언론사	미술품 경매사	아트컨설팅 아트딜러	아트페어
갤러리 오너 갤러리스트 설치/시설 Sale 업무 통번역 작가지원(관리)	편집디자인 잡지/신문기자 통번역가 광고/홍보	경매사 스페셜리스트 보관고 (작품관리) 온라인경매 IT관리 국제업무 홍보/언론 주가(자금관리)	아트컨설팅 공공미술 컨설팅 작품 sale	행사기획 갤러리섭외 홍보/언론 국내외작가관리 출판물 sale

출처 : 정태희, 아트제주 2022, 국내미술시장트렌드

기존의 문화예술의 상업적 유통경로는 1차(primary market) 화랑, 2차(secondary market) 경매장이었으나, 현재는 1차 화랑, 아트페어 2차 경매장, 경매장에서 중개하는 프라이빗 세일 등 유통경로가 다양해졌다. 국제 미술품 경매시장 동향과

중국 미술품 가격의 결정요인 분석의 허정은 ‘다른 관점 에서는 미술시장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며, 1차 미술시장 갤러리, 2차 미술시장 경매, 3차 미술시장 아트페어, 4차 미술시장 사이버미술시장으로 구분한다.’라고 했다(허정, 2019). ‘아트제주 2022 : 국내 미술시장 트렌드’에서 정태희는 New Art Market system으로 MZ셀러들의 등장으로 해외 경매회사 또는 작가에게 직접구매 또는 경매로 출품되는 상황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빠른 작품회전율과 시장에 직접적인 공급자가 증대로 연결되었다. 해외로부터 국내시장으로 중간유통을 거치지 않고 유입이 되고, 실물거래가 아닌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으로 인해, 작품의 유통과 이야기가 담긴 소장이력(provenance)과 매매계약의 정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인 발송장(invoice)에 대한 중대성도 더욱 커졌다. 또한 다양한 작가군이 등장한 계기가 되었으나, 반대로 빠르게 사라지는 작가들 역시 발생한다(정태희, 2022) 라고 말했다. 미술 경매는 2차 시장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1차 시장 활성화까지 견인했다. 경매사의 낙찰총액 추이는 미술시장 전체의 경기 변동과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팔리는 작품은 당대 미술 소비의 경향도 보여줬다(조상인, 2021).

[그림-II-2] 미술시장의 구분



새로운 디지털시대의 유통영역 확장으로 인해 창작자와 경매사-고객(구매자)이 온라인이라는 장소에서 한 번에 관계 형성 및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은 N차 시장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다. 고객과 창작자가 직접 연결 될 수 에서 있으니 아트페어성의 1차 시장으로도 볼 수 있고, 중간에 연결해주는 경매사 혹은 큐레이터가 있으니 2차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3차 시장 디지털온라인플랫폼으로 정의 하고자 한다.

경매는 상향식 경매방식(progressive auction)과 하향식 경매방식이 있다. 영국식 경매방식과 네델란드식 경매 방식이라고도 한다. 상향식 경매는 참가자들이 판매목적물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유로이 매수희망가격을 제시하기 시작하여 최종 가장 높은 가격이 제시되어 경매인의 경매종료 망치가 울리면 경쟁이 종료되고 ,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최종구매자로 결정한다. 하향식 경매는 경매사가 먼저 최고가를 제시한 다음 점차적으로 가격을 낮추어 가는데, 경매 참가자 중에서 첫 번째 호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매는 거기서 끝나게 되며, 첫 번째 호가를 구매희망자가 낙찰자가 된다(정형찬, 1994) 비딩(Bidding)이라고 온라인경매에 특화된 방식이 있는데 공개와 비공개 입찰이 혼합된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이베이의 입찰을 생각하면 된다.

<표-II-3> 경매방식의 비교

	영국식 경매방식 (English auction)	네델란드식 경매방식 (Dutch auction)
방법	상향식 경매방식 (progressive auction)	하향식 경매방식 (top-down auction)
입찰금액 기준	구매자가 추정된 본질적인 가치	경매사의 최고가 선정 후 진행
낙찰자	최고가액 제시자	최초의 입찰자

출처 : 경매의 정의 자료 검색 후 표 작성

온라인디지털경매장에서의 블록체인기술은 NFT 또한 중요하다. NFT는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을 말하며, 2021년 영국 사전출판사 콜린스의 ‘올해의 단어’ 선정 되었다. 해외주요국 디지털화폐 관련 제도 및 시장현황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화폐에는 법정통화와의 환전가능 여부를 가지고 3가지로 나누어지며 아래에서 정리해보았다.

<표-II-4>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 구분

<p>① 폐쇄형(Closed)화폐</p> <p>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법정통화와 디지털화폐간 교환사용이 불가하다. 그 예시로 법정화폐로 구매하는 온라인 게임머니를 생각하면 된다. 구매한 온라인 게임머니는 다시 현금으로 교환 할 수 없다.</p> <p>② 단방향(Uni-directional)화폐</p> <p>디지털화폐 발행기관이 정한 환율에 따라 법정통화를 디지털 화폐로만 환전이 가능하며, 해당 발행기관 내에서의 실제물품 구매 가능하다. 그 예로 페이스북 Credits, 닌텐도 포인트 등이 있다.</p> <p>③ 양방향(Bidirectional)화폐</p> <p>가치에 따라 변동환율이 적용되며 디지털화폐와 법정통화의 자유로운 환전 가능하다. 그 예로 비트코인(BitCoin), 린든달러(Linden Dollars)⁴⁾, 이더리움(Ethereum) 등이 있다.</p>
--

출처 : 황종모, 한승우, 해외 주요국 디지털화폐 관련 제도 및 시장현황(2017)

NFT(대체불가능토큰, 代替不可能토큰, 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저장된 데이터 단위의 토큰이다.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처럼 동일한 가치를

4) 미국개발사 린든랩에서 개발한 온라인 가상현실 플랫폼 ‘세컨드라이프(scend life)에서 통용되는 화폐

지니고 상호대체가 가능한 토큰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값으로 인해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말한다.

NFT는 특정자산에 대해 암호화된 소유권과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기록하는 토큰이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소유권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거래내역을 추적·증명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성소라, 톨프회퍼, 2021).

1) 문화예술 디지털경매의 조직위상

1979년 신세계미술관이 개최한 <한국근대미술품경매>를 최초로, 1981년 송원화랑 경매 등이 있지만, <한국근대미술품 경매>는 경매약관 등 경매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 회 경매방식을 바꾸는 등 운영의 일관성이 없었으며 경매 참여자의 전반적인 인식부족으로 경매 관행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났다. <송원화랑 경매>는 경매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회원제에 의하여 경매물품과 구매자를 확보하였으며, 내정가를 책정하여 경매에 부쳤다. 그 외 장안평 고미술상의 <고미술품 교환경매전>, 하나로 미술관의 <하나로 미술관 경매>, 한국화랑협회의 <교환경매전>, <아트갤러리경매>등 이 있었으나 하나로 미술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매가 단발성, 혹은 회원제운영, 내정가 지정, 서면 입찰방식을 통해 경매가 가져야할 공개적인 가격 형성기능을 포기하였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양현미, 2000). 대표적 오프라인 경매기점은 1998년 가나화랑 주최의 '제 1회 아트마켓 경매'라 할 수 있으며(최고운, 2012), 가나화랑은 이후 독립법인체로 분리하여 서울옥션의 전신인 서울경매(1998)를 설립하고 2001년 상호명을 서울옥션으로 변경하였고 현대 화랑을 주축으로 설립된 케이옥션(2005)과 함께 국내의 양대 미술품 경매회사로서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 외 2022년 상반기 기준, 9개 정도 추가로 확인되나,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문화예술품은 화랑과 경매회사가 주축으로 유통되었으나, 온라인의 발달과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다방면으로 조직화되고 있다. 단순유통업계나 백화점업계가 온라인경매와 메타버스를 신사업으로 보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 적극적인 경매시장의 새로운 소비주체인 MZ세대⁵⁾를 대상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온라인플랫폼에서는

고가의 미술품의 판매만이 아니라 와인, 신발, 시계, 주얼리, 디지털아트 상품, TCG 카드 등 인터넷활용이 용이한 MZ세대를 겨냥하여 가격 친화적 물품과 수집 및 소비심리자극하며, 직접 콘텐츠제작 참여 등의 방식으로 신규고객의 유입을 위한 방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와 분야로 디지털경매는 온라인속의 여러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과 의미를 담아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내 주요기업과 명사들이 참여하여 많은 이들에게 디지털경매의 접근성을 낮추고 있으며, NFT를 활용한 경매로 새로운 사회공헌활동과 기업홍보 등으로 연결된다.

2) 문화예술 디지털경매의 법적근거

미술(예술)시장은 1차적으로 화랑 즉 갤러리에서 작가의 작품을 만나서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주로 호당가격으로 책정이 되어있다. 호당가격이란 그림크기를 나타내는 캔버스 호수를 이야기하며, 아직까지는 전 세계 미술시장에서 통용되는 상업적인 용도로 규격화된 가격 측정방법이다. 단위면적당 노동과 재료값을 책정하며, 신진작가들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호당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본인의 수상경력, 전시 횟수 등에 따라서 초기 반응을 본 후 조절한다. 호당 가격이 10만원이면 10호면 100만원이 되는데 보통 작품이 커질수록 비율이 줄어든다. 이는 미술품이 공산품처럼 가치가 균일하게 매겨지는 현상이나, 정가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슈작가나 유명작가는 시장논리에 따라 호당가격이 형성되어 시세로 적용되니 절대적 호당가격은 무의미 하다. 이런 전근대적 방식은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 큰 변동을 겪게 되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작가의 창조적 능력이 점차 재료비나 단순 인건비와 분리되면서 작품 가격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로 급부상하게 된다.(양정무, 2012) ‘아트제주 2022 : 국내 미술시장트랜드’에서 서울옥션의 미술품경매팀 정태희 경매사는 대표적인 영국상업작가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의 작품가격형성에 대해 ”그는 제작비(재료비와 인건비), 창의적가치(미적가치), 갤러리의 중계수수료

5)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태어난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를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밀레니얼세대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1980~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가리켰다. 이후 Z세대를 따로 떼어 구분하기 시작하며 밀레니얼세대는 대체로 1980~1995년 사이 출생을, Z세대는 1996~2010년대 초반 또는 후반 출생을 뜻하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MZ세대(1980~2005년생)는 전체 인구의 33.7%를 차지한다(정다운, 반진욱, 2002)

수익이 작품의 판매가격이다.“ 라고 인터뷰내용을 말했다. 최근에는 아트페어를 통한 작가와의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트페어는 1차 시장이나, 작가에게 구매한 컬렉터들이 재판매를 위해 의뢰한 작품이 소개되기도 하는 2차 시장이기도 하다. 경매는 어떤 대상 물건을 사고자하는 구매희망자들 사이에 경쟁을 통해, 최고 입찰가격에 낙찰하여 판매하는 방식이고 경매회사는 낙찰자와 위탁자를 중계하는 경매사업 및 미술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다. 즉, 경매회사는 거래 당사자 양측에서 중개수수료를 받으나, 경매 가격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시장의 판단에 가격결정을 맡긴다(정태희, 2022). 기존에도 이베이 등을 통한 개인물품의 개별적 경매진행이 가능하였다. 이베이는 낙찰된 물품은 무조건 구매를 해야 하는 기본정책으로 구매자가 낙찰 후 결제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아이디가 사용정지 된다. 그에 대한 방편으로 회원등급에 따라 구매예정자는 경매보증금을 구매하게 하여 낙찰 후 미지불에 대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 일반적으로 온·오프라인경매를 진행하는 경매회사에서는 내부정책에 따라 경매 후, 낙찰에 따른 수수료, 물품 수령, 배송에 대한 절차를 진행한다. 낙찰철회에 대한 절차도 있는데 부득이 철회하는 경우에도 약관에 기재된 기간 내에 통보하고 낙찰가의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는 약관규제법과 관련하여 경매회사의 약관에 따른 위약금규정이 유효하다는 실제 판례도 있다(이용경, 2021).

3) 문화예술 디지털 경매의 정부의 지원체계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디지털경매에 관한 명확한 근거법률은 없다. 가장 근접한 법은 경매법(법률 제968호)과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 법률 제17799호)로 예를 들 수 있다. 경매법은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의 경매와 기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를 규정함이 목적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음으로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디지털경매장에 구성에 관한 근거 법안이 될 수 있으나, 문화예술경매를 위한 디지털경매장 구성에 따른 법적근거와는 결이 다를 것을 명시한다.

<표-II-5>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일자	지역	법률조항	법률명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법률 제5243호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995년 1월 1일	직할시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	법률 제4789호	지방자치법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 설치	법률 제4049호	대전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1986년 11월 1일	광주직할시	법률 제3808호	광주직할시 및 송정시설치에 관한 법률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법률 제3424호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설치에 관한 법률
1981년 4월 4일	부산직할시	법률 제3412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3년 1월 1일	부산시	법률 제1173호	부산시 정부직할에 관한 법률
1949년 8월 15일	서울특별시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

출처 :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지정 검색 후 수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가는 행정적·제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가 가능하다.

현재 제주특별법 내에 문화예술 진흥조례에는 제3조(기능)에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7. 「문화

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2.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3장 1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따르면,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법인 2.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미술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제주자치도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미술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중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확인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법을 기반으로 온라인디지털경매장 구성을 위한 근거로 하고자 한다.

2. 디지털 경매와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문화예술시장 관련 선행연구

1) 블록체인기술이 접목된 디지털경매시장의 위상 관련 선행 연구

지속된 팬데믹 이후의 세계시장은 더욱더 모든 사회의 디지털화를 가속시켰다. 그 예로 디지털 온라인마켓 역시 다양한 분야로 활성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플랫폼의 개발만이 아니라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작품들도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이제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2018년 영국의 얼굴 없는 거리의 그래피티 화가인 뱅크시(Banksy)의 작품인 ‘멍청이(Morons)’를 \$95,000(한화 약 1억700만원)에 구매하여, 2021년 원본그림은 불태워버리는 이벤트를 ‘불탄뱅크시(Burnt Banksy)’라는 트위터 개정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⁶⁾ 해당 작품 원본을 디지털파일로 변환하여 NFT로 민팅하고 원본은 불태운

6) 이후 ‘인젝티브 프로토콜’(Injective Protocol)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미국의 탈중앙화 파생상

것이다. 민팅이란 영어단어인 Mint(화폐를 주조하다)에서 유래된 디지털자산을 NFT로 발행한다는 의미이다. 민팅된 이 디지털파일인 작품은 추후 2021년 3월 4일 오픈씨(OpenSea)에 열린 경매에서 3월 9일 228.69ETH에 판매되었으며 한화 약 4억 3000만원으로 오프라인의 실제본의 4배가 넘는 가격으로 NFT 디지털변환 파일의 가치를 입증한 사례이다. 혹자들은 NFT파일의 가격상승을 고려한 일종의 퍼포먼스일 뿐이라 말하지만, 실물원본이 사라진 지금, 유일무이한 증명이 가능하며, 원본성의 가치증명이 가능한 NFT변환 파일이 또 다른 원본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2021년 한국 미술시장 결산에 따르면 2021년 미술품 경매시장은 11월 기준 국내 10개 경매사(K-ARTMARKET 데이터 수집 대상 경매회사(가나다순) 꼬모옥션 / 라이즈아트/ 마이아트옥션 / 서울옥션 / 아이옥션 / 에이옥션 / 칸옥션 / 케이옥션 / 토탈아트옥션 / 헤럴드아트데이)가 개최한 238회의 경매(오프라인 36회, 온라인 202회)를 통해 출품된 31,280점의 작품 중 20,771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66.4%, 낙찰 총액 2,968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명품, 보석, 유가증권 등 미술품 외 경매 물품은 제외하였으며, 해외 경매의 경우 환율 적용 기준에 따라 경매사의 공식 낙찰규모와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20년 1,139억 원 대비 160.6%, '19년 1,543억 원 대비 92.4% 증가한 수치이다(김봉수, 2022)

<표-II-6> 2018~2021년 국내 미술시장 규모 예측/단위: 억 원, %

		2018	2019	2020	2021
화랑	시장규모	1,953	1,851	1,665	4,400
	증감률	-	▲5.2	▲10.0	163.3
경매회사	시장규모	1,511	1,158	1,158	3,280
	증감률	-	▲23.4	-	183.2
아트페어	시장규모	732	802	468	1,543
	증감률	-	9.6	▲41.6	229.7
계	시장규모	4,198	3,813	3,291	9,223
	증감률	-	▲9.2	▲13.7	180.2

품 거래소이다.

<표-II-7> 2018~2021년 국내 미술품 경매 개최/단위: 회

	2018	2019	2020	2021
오프라인	32	33	32	36
온라인	126	159	163	202
계	160	192	195	238

<표-II-8> 2018~2021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규모/단위: 백만 원, 회

	2018		2019		2020		2021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오프라인	88,922.8	90,202.6	69,259.2	61,225.9	35,257.7	53,434.1	115,111.0	126,631.0
온라인	10,522.4	10,407.9	12,100.7	11,765.5	12,562.2	12,691.8	29,746.5	25,408.8
계	99,445.3	100,610.6	81,359.9	72,991.4	47,819.9	66,125.9	144,857.6	152,039.8
	200,055.9		154,351.3		113,945.8		296,897.5	
증감률	-		-22.8		-26.2		160.6	
낙찰률	65.6		63.2		63.3		66.4	

출처: 김봉수, 2021년 한국 미술시장 결산

2) 블록체인기술이 접목된 디지털경매시장의 법적근거 관련 선행 연구

국내에서는 아직 블록체인 기술은 생태계 구축과 법적지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적용 영역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가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한 법적인 논란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 디지털통화)와 블록체인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일부모델일 뿐이다.

<표-II-9> 블록체인기술과 가상화폐

블록체인기술	
정의	탈중앙화의 분산형구조의 장부
블록체인기술을 사용한 지급수단 명칭	가상화폐, 디지털통화, 암호화폐
지급수단의 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기술 사용처	금융, 공공분야, 물류, 보험, 의료기록,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저작권 등

‘블록체인 기술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김홍기교수는 “법제도의 설정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2가지의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블록체인 기술은 익명의 거래당사자들이 중개기관의 도움이 없이도 시스템을 신뢰하고 거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생적인 블록체인 거래 생태계의 구축이 가능한지, 정부는 어느 정도로 개입하여야 하는지의 탈중앙화의 논의로 이어진다. 둘째, 블록체인기술의 본질은 인터넷 프로그램이므로 시장 사정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률적 규제 방식을 도출하기 보다는 적용되는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규제방식과 수준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고려하면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운용방안이 필요하다. 가상화폐의 경우, 법적 성격이 분명치 않고 사용처에 따라 그 기능과 효과가 달라짐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ICO의 경우, ICO를 통한 자금조달행위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잠재력이 높는데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기에, 외국의 운용사례를 참조하면서 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계약의 경우, 즉각적인 계약의 이행으로 거래의 효율성을 증가시키지만 현실세계에 적용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이나 변호사 등 사람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설립등기, 인허가 등 오프라인 절차에서도 관련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김홍기, 2018).

블록체인 기술의 특이성은 중앙 서버가 아닌 모든 디지털상의 공동체가 하나의

원장보관소⁷⁾ 역할을 하며 공유원장을 통한 모든 네트워크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록하고 복제 및 저장하여 해당 자산의 이동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효율적인 탈중앙화 방식의 기술이다. 기존 온라인상의 문화·예술 저작물은 무한 복제와 수정이 쉬웠으며, 이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저작물의 사용은 무료 혹은 개인수정, 배포 등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책임감 분산효과를 주어 문제의식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기술 복제된 작품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더라도 원작자나 소유주 증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는 저작권, 라이선스 등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이는 온라인자산의 권리 양도에도 걸림돌이 되었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에서도 NFT를 활용한 디지털자산의 거래에 관한 희소성과 유일성, 원본성의 가치증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이는 원작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작품을 거래하는 구매자들의 저작물 양도 및 사용 등의 소유권의 이전의 명확한 기록 및 증빙에 대해 각광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희소성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 명품회사들은 제품 구매 했을 때 고유의 시그널 넘버와 정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종이로 된 정품인증보증서(또는 ‘플라스틱 개런티카드’)를 주었던 것이 지금은 디지털보증서로 좀 더 편리하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SSG닷컴은 ‘SSG개런티를 도입하여 업계최초로 NFT를 활용하여 플랫폼이 직접 정품인증을 보장해 주었다. 가깝게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디지털증명서 COOV(‘쿠브’)나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PASS(‘패스’)를 떠올리면 알 수 있다. 문화예술에서의 NFT는 디지털정품 보증서와 같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상의 거래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 이렇듯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시장의 범위는 무한하며 예술, 회화, 증명서 인증부터 부동산, 저작권, 디지털작품 등 전 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독창성과 유일성을 지닌 NFT기술은 메타버스(metaverse)라는 디지털세계와의 결합으로 공간이라는 매개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었고, 그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시공간과 그와 연계한 디지털경매장의 활용이다. 메타버스란 1992년 출판된 SF소설 스노우크래쉬(snow crash)에 등장한 핵심개념이며,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한 신조어이다(박

7) 거래를 계정별로 전부를 기록하며 계정 전부를 포함한 장부, 원장부(元帳簿), 총계정 원장이라고도 한다.

정수, 2021).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의미한다. 국내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은 2021년부터 가상융합기술(XR)을 활용한 전시장 오프라인 무대 진행 내용이 메타버스 가상공간 컨벤션으로 실시간 변환되는 M2O (Metaverse to Offline) 전시회나,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전시 공간 등이 있고, 피카프로젝트(공동대표 송자호, 성해중)에서는 2021년 3월 18일 국내 최초 미술품 NFT경매를 론칭하여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경매가 이루어졌다. 디지털경매는 예술작품만이 아닌 스포츠, 음악, TCG⁸⁾게임, 컬렉터블, 분산형 금융 상품,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⁹⁾ 등 전 요소를 포괄하여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효성그룹은 갤럭시아메타버스에서 프로골퍼의 라운딩상품을 특전으로 포함하여, NFT로 발행하여 경매방식으로 판매되었고, 올해 초 한 선거캠프에서는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한 펀드NFT를 발행하여 약정금액에 따라 펀드참여증서 및 차용증서가 내장된 NFT이미지 세트를 제공하였다. 이는 경매방식이 아니라 추첨에 따른 방식으로 NFT로 발행된 이후 원본은 파쇄 또는 삭제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지갑은 해킹이 불가능하며, 개인키 정보가 있어야만 지갑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상자산인 NF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경매는 정부의 법적이 제한과 제제가 없더라도 블록체인 주소 상에 작품의 진위여부 증명, 원소유주 및 소유권의 이동흐름이 기록되어 유일무이한 원본의 희소성을 보증하고 있다.

디지털경매에 관한 현행 법률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각 경매대행사의 약관의 규정에 따라 적용 되었다.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관련하여 경매 서비스 진행에 따른 수수료, 운송, 보험, 보증, 면책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3) 관련 선행연구분석을 통한 본 논문의 위치와 차별성

법제화의 틀 마련에 대한 선행연구를 확인한 결과, 국내외 예술품 경매에서 주요

8) TCG(Trading Card Game)의 약자. 특정 카드를 가지고, 각 카드의 캐릭터의 속성과 특성으로 텍(팩 구성)을 만들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상대와 대전한다. 예를 들면 포켓몬카드와 유희왕등이 있다.

9) 어떤 서비스에 대해 이용권한을 갖는 토큰

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미술품 경매시장 법제화 방안연구 : 영국·미국·홍콩의 유관법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형 미술품 경매제도 도입방안 연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경매시장의 법적 근거마련의 필요성과 해외 유사사례 접근 방식으로 실증자료에 따른 논의를 이야기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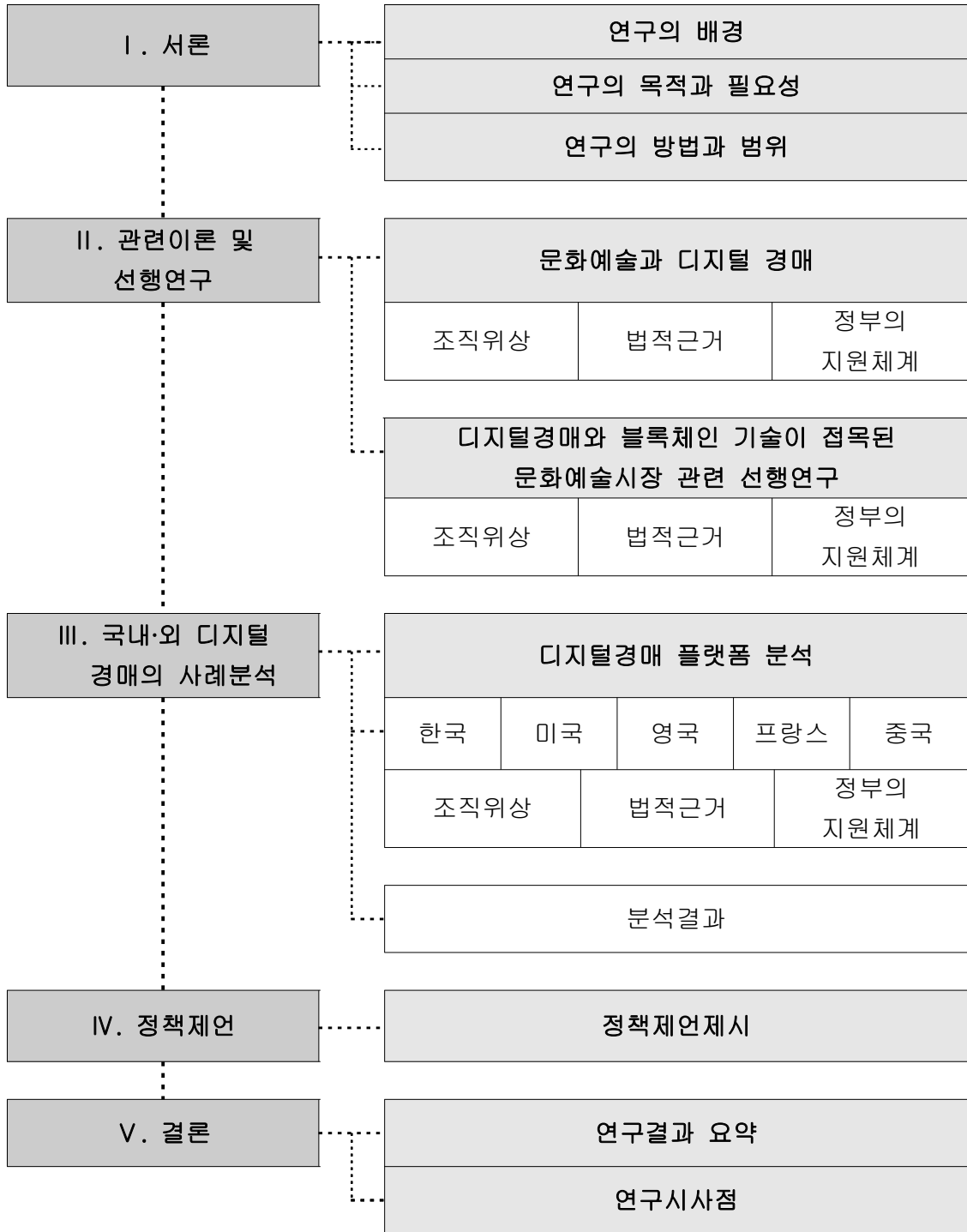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이들의 연구를 기초로 다변화하는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블록체인기술이 접목된 디지털경매의 법적책임과 이에 따른 세부적인 제도화 과정의 필수 당위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디지털 경매장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정부차원의 디지털경매장 구성에 관한 국가별 법률 제정 및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해당 현황을 토대로 경매와 블록체인기술, 가상화폐의 제도적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내용을 요약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된다. 제주지역이라는 지리적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나, 디지털공간내의 장소를 의미하기에, 공간적, 지리적, 그에 따른 시간적 제약은 무의미하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자치행정과 조례에 따른 절차적 제도화 방안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하고자 하는 제주도의 기반사업에 대한 행정적 욕구를 결합하여 블록체인기술과 접목된 디지털경매장을 구성하고 나아가 문화예술블록체인특구를 구성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한다. 그러나 블록체인기술과 결합한 경매가 각각 가져야할 보편적인 기준을 변형하거나 왜곡 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 분석의 틀

이론 및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예술 디지털경매에 대한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개념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과 디지털경매의 정의 및 블록체인에서의 대체불가능토큰에 대해 다루었으며, 국내 디지털경매 도입 및 정착과정 및 국내 디지털경매의 법적근거와 정부의 지원체계를 확인하였다. 둘째로 해외 디지털경매의 이전의 온라인경매회사에 대하여 조사하고, 블록체인기술과 결합한 경매 체계로의 환경변화에 따른 선행연구와 사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네 나라의 사례를 비교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분석결과와

연구를 토대로 제주지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장 구성을 위한 제도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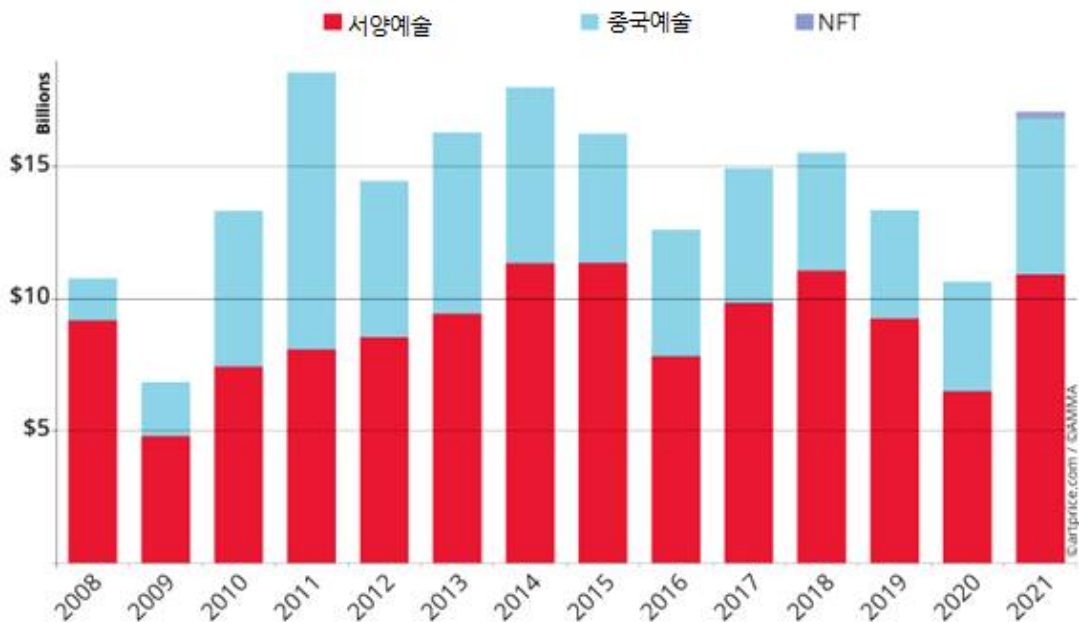
<표-II-10> 분석의 틀



Ⅲ. 국·내외 디지털 경매의 사례분석

화랑중심에서 경매중심으로 바뀐 것은 1945년 이후로 세계적 경매회사는 소더비(Sotheby's, 1744)와 크리스티(Christie's, 1766)가 있다. 해외 미술시장의 경매 본격화는 18세기 후반부터이며 소더비와 크리스티로 인해 전 세계의 85%¹⁰⁾를 장악하고 있다. 200년이 넘는 설립 역사를 가진 이 두 경매장은 매년 1,2위를 다투며 경매시장을 주도하였으며, 2021년 소더비 \$73억(한화 약 8조 7000억), 크리스티 \$71억(한화 약 8조 5000억)으로 소더비가 선두에 섰다. 글로벌 경매사중 업계 3위의 영국의 필립스도 사상최대 실적인 \$12억(한화 1조 4000억)을 달성하였으나, 업계 1,2위와의 격차가 더욱 도드라진다. 국제미술시장 분석기관인 아트프라이스닷컴에 의하면 전 세계 미술시장은 서양미술과 중국미술로 구분되었으나 2021년에 NFT미술이 새로운 장르로 진입하였다.

[그림-III-1] Evolution of global auction turnover(2021년)



출처 : 아트프라이스

10) 2007년 세계 미술품 경매시장은 100억달러를 넘었는데, 그 중 소더비스와 크리스티의 비중은 98%를 넘어섰다.

예술시장의 디지털경매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경매 구조와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상당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나 미술시장의 블록체인기술의 영향은 NFT를 활용한 진품보증과 소유권 증빙이 가능한 예술작품이 제작됨으로써 기존의 경매시장에서 새로운 장르의 탄생으로 볼 수 있다. NFT는 창작물로서의 중요도만이 아닌, 가상화폐라는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으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새로운 흐름으로 진입했다.

미술시장은 2019년도에 비해 2021년 비약적인 수익과 판매량을 보이며, 기존 시장에 없었던 NFT는 2021년 신규 진입하여 \$232.43백 만 달러의 수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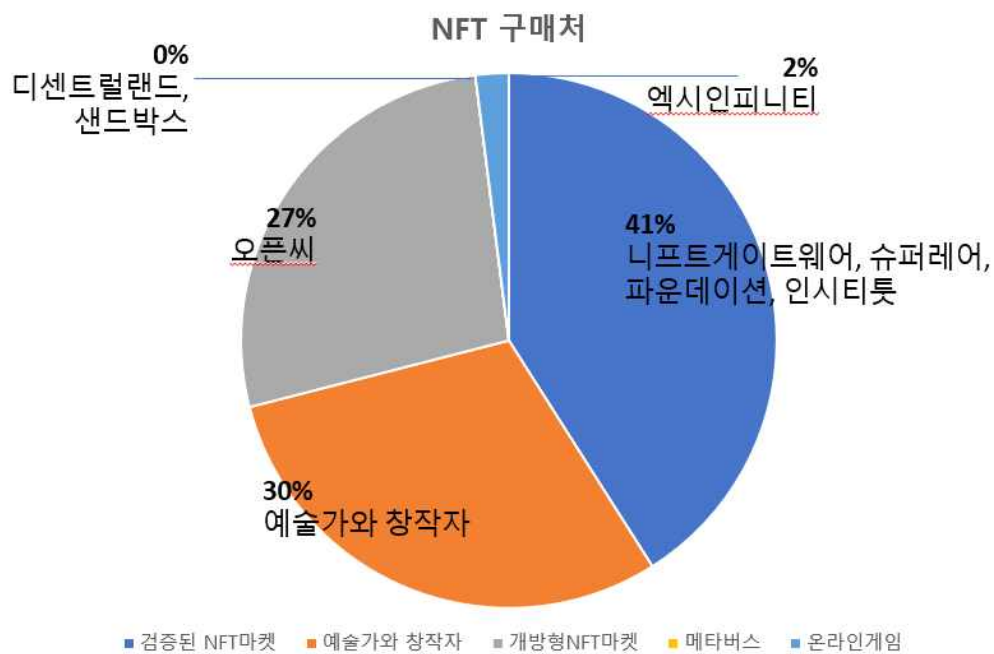
[그림-III-2] Evolution of the Art Market(2021년)



출처 : 아트프라이스

현재 NFT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대부분 해외 플랫폼이며, 오픈씨(OpenSea), 라리블(Rarible), 민터블(Mintable), 메이커스플레이스(MakersPlace), 바이낸스NFT(Binance NFT) 등이 NFT 거래를 지원하며, 이러한 플랫폼에 접속한 후 NFT 파일을 생성해 판매하거나 기존에 보유해온 NFT 파일을 판매할 수 있다(박수호·반진욱, 2021). 영국 특수보험업체 히스콕스가 최근 발표한 ‘온라인 미술거래 보고서 2021’에 따르면 가장 많은 NFT의 구매 장소는 검증된 마켓플레이스인 Nifty Gateway, Foundation, Superrare 및 Institut 등으로 41%를 차지했다. 30%는 예술가나 창작자로부터 직접구매를 하였고, 27%는 무허가형(개방형) 플랫폼인 오픈씨에서 구매한다고 했다.

[그림-III-3] WHERE ARE THEY BUYING NFTS?



출처 Hiscox Online Art Trade Report 2022 - ArtTactic

NFT마켓플레이스는 ‘오픈’된 정도에 따라 무허가형(permissionless), 부분선별형(semi-curated), 완전선별형(fully-curated)으로 나누어지며, 주로 미술품 NFT는 부분선별형 NFT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데,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거나 허가가 있어야 작품을 올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마켓플레이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파운데이션(Foundation)과 블록파티(Blockparty)가 있으며, 허가형 마켓플레이스에 비해 다소 제한된 플레이어들의 작품을 취급하므로 컬렉터 입장에서선 보다 수준 높은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성소라, 룰프회퍼, 2021).

<표-III-1> NFT마켓플레이스 비교

무허가형 (permissionless)	부분선별형 (semi-curated)	완전선별형 (fully-curated)	비사용자 제작형	메타버스형
누구나 손쉽게 파일업로드 가능	누군가에게 초대받거나 허가가 있어야함	선발된 창작자들에게만 작품 업로드 권한 부여	특정 블록체인회사가 제작하고 발행한 NFT만 구매가능	아바타를 생성, 디지털지갑연동, 사용자가 직접적 콘텐츠제작,소비
마켓플레이스 항목,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각각 다름	본인증명절차를 거친 창작자들에게 상점허가	전통시장의 아트갤러리형태 와 비슷, NFT에 특화	토큰화된 컬렉터블이 주거래	미술품,음악,의류 ,가상토지등 다양한 NFT거래
라리블, 오픈시, 조라	파운데이션, 블록파티	크립토닷컴, 메이커스플레이 스, 슈퍼레어	NBA툽샷, 소레어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출처 : 성소라, 룰프회퍼, 스콧 맥러플린, NFT레볼루션 현실과 메타버스를 넘나드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탄생, 더퀘스터, pp130

전통 미술시장의 아트갤러리 형태와 비슷한 완전선별형 NTF 마켓플레이스는

선발된 창작자들에게만 작품 업로드권한을 부여하며, 크립토닷컴(<https://crypto.com/>), 메이커스 플레이스(<https://makersplace.com/>), 슈퍼레이어(SuperRare) 등이 있다.

메타버스형 NFT 마켓플레이스도 있는데 주로 아바타라는 ‘가상세계에서 존대하는 또 하나의 나’를 생성하여 기존의 캐릭터꾸미기 가 아닌, 디지털지갑을 연동하여 가상 토지, 패션용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콘텐츠(게임, 음악, 공간형성)등을 제작하여 다른 사용자들의 구매나 이용으로 인한 수익창출의 경제활동도 가능케 하며, 갤러리 또는 홍보관 등의 공간을 마련하여 작품전시, 홍보, 판매 등을 연계한다. 주요 플랫폼으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현실 플랫폼인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 샌드박스 등이 있다. 2021년 소더비는 디센트럴랜드에 자신들의 갤러리를 열고 디지털아트 작품을 판매했다.

NFT마켓플레이스는 온라인경매장이기도 하지만, 특정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작품 활동이나, 매매대금지불, 유통흐름을 보존, 디지털가상공간마련 등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포괄적인 온라인경매장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디지털 경매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별 공공조달관련 경매는 이전부터 발달되어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4개국 역시 공공조달을 위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온라인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단 정부차원에서의 공공조달의 입찰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하는 정부차원에서의 문화예술경매플랫폼 운영과는 결이 다르기에 비교분석을 생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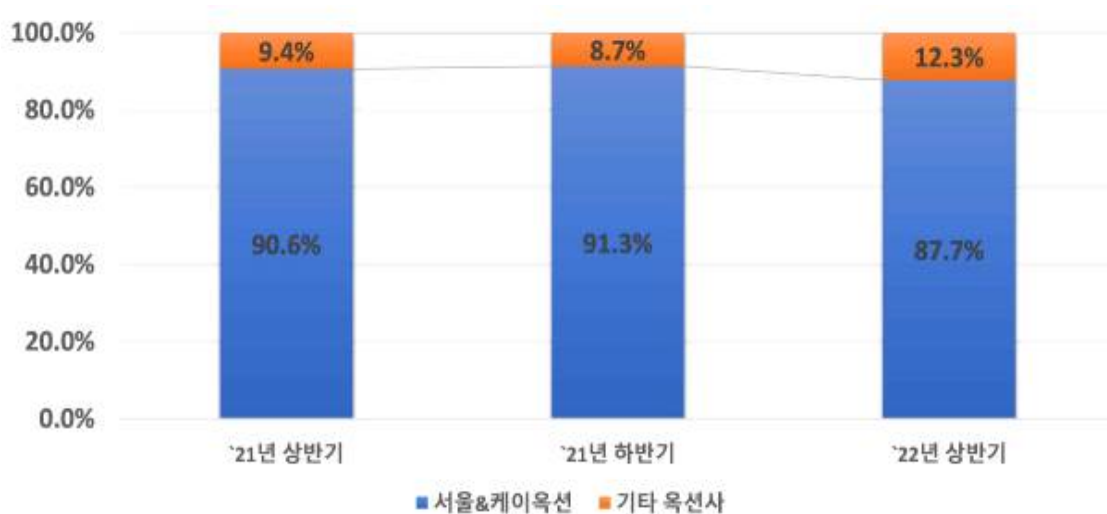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총 5개국의 대표적 경매회사의 발전단계와 각 국가별 법적근거와 정부의 지원체계, 디지털경매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1. 한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 플랫폼 분석

1) 한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의 조직위상

국내 미술품경매시장은 케이옥션과 서울옥션으로 양분하고있다. 2021년 기준 국내 미술품 경매낙찰총액 전체인 1,449억 원 중 42.2%는 케이옥션이, 58.4%는 서울옥션이 차지했다. 최근 3개년 평균적으로도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의 87.9%를 두 회사가 점유했다(정다희, 2022). 양대 미술품 경매회사는 각각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단순한 미술품 경매만이 아닌 보석, 와인, 디자인, 서적, 가구, 자동차 등 다양한 아이템 경매를 진행하였고, 옥션 아카데미 프로그램운영, 사회공헌 활동 등 문화예술 발전과 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III-4] 2021~2022년 반기별 국내 미술품 경매사 낙찰 규모



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

(1) 케이옥션(K AUCTION)

케이옥션은 2005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2006년 국내 업계 최초 온라인 경매시스템을 구축한 경매회사이다. 연간 약 80여회의 온라인 경매를 개최하고 2010년 국내 미술시장 최초로 활동의 일부를 사회적 책임에 투자하였는데, 다양한 자선경매의 수익금을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연결하는 한국메세나협회에 기부한 것이 좋은 예이다. 2015년 5월, 자체 미술품 유통관리플랫폼, ‘케이오피스(K-Office)’ 구축하여, 모든 경매 응찰 참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 11만 건 이상의 미술품 유통을 표준화하여 국내에서 가장 방대한 미술품 유통정보를 집적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에 대해 본격적으로 2018년부터 케이오피

스를 통해 물류, 영업, 시장예측 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6년 12월 20일자로 종속회사인 케이옥션 온라인을 흡수 합병했다. 케이옥션은 2022년 1월 24일 코스닥시장¹¹⁾에 상장했고, 2022년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와 운영방식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정보 보호 관리 체계’(이하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인증을 획득했다. 케이옥션은 국제미술시장, 다양한 작가와 작품, 미술사 등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와 강의를 제공하는 케이옥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판매서비스, 전시회 등의 행사를 위한 공간대여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자회사인 ‘아트네이티브’를 통한 해외네트워킹을 확대하여 해외 작품 소싱¹²⁾능력을 강화하고, ‘아르떼케이’를 통하여 신진작가 발굴 및 종합적인 작가지원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 ‘아르떼크립토’는 새로운 형태의 미술품 시장에 진출하는 신사업을 적극 진출하려 하고 있다.

(2) 서울옥션(SEOUL AUCTION)

1983년에 오픈한 ‘가나화랑’은 국내 화랑 최초로 전속작가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미술 거장의 전시를 국내 최초로 소개했다. 1998년 ‘가나아트갤러리’의 이호재대표는 국내 첫 미술품 경매회사인 서울옥션을 설립했다. 서울옥션은 2008년 7월 1일 코스닥에 상장하였고, 11개의 계열회사 및 관계회사를 가지고 있다. 서울옥션은 2014년 8월 eBid Now라는 이름으로 온라인경매가 런칭하였다. 2019년에는 서울옥션 IT관계사 블루인덱스(BLUEINDEX)가 한화시스템과 블록체인기반 ‘예술품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다. 해당 플랫폼은 회화, 예술품, 조각상, 아트토이, 인쇄물, 사진, 피규어 등 다양한 예술품의 거래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다. 2021년 비딩마켓플랫폼인 ‘블랙랏’(BLACKLOT)을 오픈하고 신세계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 확장을 이어나갔다. ‘블랙랏’은 경매회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직접 물품을 등록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의 오픈마켓 플랫폼이다. 미술품을

11)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크게 유가증권시장(KOSPI MARKET)과 코스닥 시장이 있으며, 코스닥시장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증권 거래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즉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회사이며, 이를 상장 회사라고 한다.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은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회사이며,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공신력이 확보되는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가치 상승과 직결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한다.

12)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획, 개발함에 있어 상품의 경쟁력과 구성강화를 위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일련의 개발과정

비롯한 명품, 가구, 조명, 공예, 시계, 피규어, 아트토이, 스니커즈 등 수집가치가 있는 아이템들이 거래되며 최근에는 '2022 아트워크'를 개최하였다(강종훈, 2021). 코로나의 영향으로 오프라인경매의 연이은 취소로 인하여, 서울옥션은 매월 정기 온라인경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오프라인경매 응찰 채널의 다양화를 시도했다. 신규시장을 발굴하고, 신진작가의 경매를 진행하였으며, 기존 경매시장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가의 작품들을 엄선하여 경매시작가 0원으로 시작되는 제로베이스(ZEROBASE)경매도 진행하였다. 이는 데뷔가 힘들었던 신진작가에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수집가가 원하는 작가의 작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수집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다.(정태희, 2022)

2) 한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 법적 근거

국내 디지털 경매의 시작은 1996년 아마존(Amazon)과 이베이(eBay)의 각각 책과 경매 사이트의 오픈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지도 있는 화랑들이 예술품에 대한 웹진발행, 온라인갤러리 운영, 작품정보 전달과 판매망으로 활용하여 유통하였다.

특정한 장소(오프라인)에서 경매사가 현장에서 진행하며 서면 혹은 전화응찰로 이루어졌던 경매를, 온라인으로 장소만 바꾸어 응찰과 낙찰과정을 진행한다. 주로 신진작가나 중견 작가 등의 참여로 진행된 온라인 경매는 오늘날에 이르러서 수익 원 대의 대가의 작품 또한 아트테크의 흐름을 타고 여러 소비자들(특히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이 신규 유입되었다. 이들은 값비싼 문화예술 작품을 일정의 금액을 지불한 만큼 소유권을 나눠가지며 분할소유권시장이 2020년 51억 원에서 2021년 545억 원으로 급성장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낮아진 접근성으로 다가온 분할소유권 시장의 인기를 증명하듯, 21년도 545억 원의 56.9%인 31억 원이 2022년 상반기에 달성되었다. 2020년10월 20일 국내 최초의 무관객 비대면 실시간 경매('라이브온 경매')를 케이옥션에서 진행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상황에 발맞춘 새로운 시도도 진행되었다.

팬데믹 시기의 흐름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공간이 확장되면서 장소적, 시간적 제약은 줄어들고, 문화예술의 접근성은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다방면으로 시도되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예술품경매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실행으로 2020년 3277억 원을 기록했던 한국 미술시장은 2021년 324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국내 미술시장의 가파른 확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법률은 아직 민법 및 상법상의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

경매회사는 약관을 통해서 고객과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경매회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회사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된다(최민정, 2017). 경매회사는 단순히 위탁자의 계약상대방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데 그치지 않고 미술시장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유지할 공적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의 무불이행에 대한 배임죄 성립을 저어하는 대법원의 최근 경향에도 불구하고 미술시장 참여자에 대한 형법적 보호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유경, 2021). 한편, 경매회사는 대부분 경매거래 약관을 통해 거래하고 있으므로 문제된 미술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불공정 약관으로 약관의 내용이 약관규제법 등에 의해 무효가 되는 때는 계약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최민정, 2017). 본문에서는 디지털경매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¹³⁾ 및 통신판매의 영역에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법은 제정 당시 “통신판매중개자”라는 법적 개념을 전제로 하여, 동 사업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어, 동 사업자는 이윤은 있지만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사업자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노종천, 2013) 기존의 통신판매중개자를 전제로 설계된 전자상거래법은 2012년과 2016년의 개정과 본조신설(제 20조, 제 20조의 2), 2021년 3월 온라인플랫폼 거래중심으로 개편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으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13)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為)를 하는 것,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항

<표-III-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의안명	제안자	상임위원회	국회현황 (추천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2020. 7. 13.)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법안소위 (2020. 9. 21.)	(2021. 11. 24.)	2101835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전해숙의원 등 12인 (2020. 12. 1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법안소위 (2021. 2. 1.)	(2021. 11. 25)	210636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2021. 1. 25.)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법안소위 (2021. 2.16.)	(2021. 11. 24)	210762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법안소위 (2021. 2. 16.)	(2021. 11. 24.)	210770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 (2021. 1. 28.)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법안소위 (2021. 2. 16.)	(2021. 11. 24.)	210774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2021. 3. 8.)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법안소위 (2021. 6. 22.)	(2021. 11. 24.)	2108626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2021. 3. 15.)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법안소위 (2021. 6. 22.)	(2021. 11. 24.)	210880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2021. 4. 20.)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법안소위 (2021. 6. 22.)	(2021. 11. 24.)	2109598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제21대

1990년대부터 경매형태의 전자상거래가 도입된 국내 미술계(김인구, 2000)는 전문 미술종합아트몰로서 미술시장에 새로운 형식으로 진입하였고, 콘텐츠 성실도와 고객DB마케팅에 따라 판매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나, 화랑과 현장중심에서 시작된 온라인예술쇼핑몰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상업화와 변해가는 시장흐름을 따르지 못해 잠식되었다(이우채, 2005). 2000년대 이후 오픈된 온라인 비즈니스 판매방식은 기존의 인지도로 운영되었던 가나아트몰(www.ganaartmall.co.kr)이며, 이후 2001년 서울옥션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4년 eBid Now 온라인경매 런칭 등 지금까지 국내 미술품 경매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2) 소득세법

2013년부터 시행된 미술품 거래에 대한 소득세는 국내 미술시장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생존해있는 국내작가의 작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비과세 대상(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14항)으로써, 많은 소비자들이 투자가치¹⁴⁾로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III-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1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14항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3. 11. 5., 2019. 2. 12., 2021. 2. 17.>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14) 과세대상 미술품(회화, 데생, 파스텔, 오리지널판화, 인쇄화, 골동품 등), 조각은 제외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은 취득세, 보유기간과 금액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주식은 매각 시 증권거래세, 내년부터는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양도세)도 납부하게 된다. 미술품은 거래 횟수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을 기타소득¹⁵⁾으로 분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표-III-4)이 통과되었다.

<표-III-4> 소득세법 개정안 제21조 26항

소득세법 개정안 제21조 26항

-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존의 법은 반복적인 거래를 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최고 42%의 세율을 부과하였다. 6,000만원이 미만일시 비과세, 이상인 경우도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90%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면서 나머지 10%에 대해서만 과세표로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5,000만원에 구매한 그림을 1억원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차익은

15) 일시적, 우발적, 빈번하지 않는 거래

5,000만원이지만, 세금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으로 계산된다. 양도가액(1억원)에서 필요경비로 80%를 공제한 후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 세금 22%를 매겨 44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해당 그림은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90%의 필요경비를 적용해 220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1억이 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였다면 동일한 필요경비를 적용 받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르다. 2021년부터 부과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2023년부터 암호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과세로 적용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됨으로 과세 시점이 미뤄졌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NFT라는 암호화폐 기반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자산’인지 ‘미술품’으로 분류될지 논의중이어서 과세개념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 될 시, 국내거주자라면 가상자산을 양도한 소득 중 250만원을 기본 공제 한 뒤 잔액에 대해 20%의 세금이 과세되며, 해외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라면 가상자산 거래소나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한 후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국내 NFT거래소는 2021년 ‘엔에프팅’이 NFT기반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최초이며, 이후 그라운드X(클립 드롭스), 업비트(람다256), 코인플러그(메타파이), 위메이드트리(위믹스 옥션) 등 대형 업체들이 거래소를 오픈하였고, 이들은 이더리움만이 아닌 국내코인으로도 사용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코로나 19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문화예술품 경매시장은 장기화되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거래의 증가로 작품의 상태조사서(Condition Report)의 역할이 커졌다. 이는 작품의 객관적, 물리적, 환경적 등 작품 전체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좋은 작품이라도 보관이나 관리가 잘못되면 재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해당 작품의 계약서, 작가서명부터 현재 소장자(소장기관), 작품 상태에 대한 손상도, 보존상태, 재료나 기법, 서지이력, 전시기록, 컨디션리포트작성일 등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생존 작가라면 작품제작완료 후 작가를 통한 확인서가 발행되면 검증이 쉽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조차도 작가의 기억에 의지하기에는 여러 국내 문제 사례가 있다.¹⁶⁾ 주로 경매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번의 감

정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부에 감정을 맡기며, 최근의 구매자들은 한곳이 아닌 두 곳 이상의 감정의뢰를 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한국화랑협회(2019)와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2019)의 감정이 통용되고 있으며, 2002년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로 출범한 국내 최대 감정기구였던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은 이후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미술품감정협회와 주식회사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으로 분리 운영되다, 2018년 9월에 돌연 문을 닫았다. 업무종료 전까지 평가원이 발행한 감정서는 9,000 여건이 넘었으며, 작품의 진위를 증명하는 감정서를 발행하던 기관이 사라지면서 해당 감정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결국 피해를 본 사람들은 해당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감정원에 감정을 요청한 컬렉터들(수집가) 이었다. 화랑협회는 화랑주들이 주축이고, 감정센터는 학예사나 큐레이터 등이 중심이다. 양쪽 모두 새로운 감정 기법 도입, 미술품조사·분석 전문가 양성 등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최재훈, 2022).

약칭 ‘감정평가법’은 미술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대해 “토지 및 그 정착물(제 2조),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4조(직무) 2항에서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있으나 예술품의 특수성에 대한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의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법률적용은 상황에 따라 어렵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¹⁷⁾, 진도군 작품수집에 관련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술품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이 있으나, 미술품구매 또는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이며 경매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블록체인 지원 조례는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지원조례가 유일하게 현재기준으로

16) 천경자(미인도 위작사건,1991) 2019년 7월 진품으로 대법원판결 , 이우환(위작의심 13점, 2016), 위작조직 두곳으로 부터 유통된 위작품 총100점 중 13점이 위작으로 확정 판결, 이중섭, 박수근(위작 2834점, 2005), 2017년 위작 전점 몰수판결.

17) 자치법규 지방자치 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된 조례이다. 해당 조례에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법률자문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에 있다고 제 1조(목적)에서 명시되어있다. 해당 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과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손해배상의무는 무효로 보고 있으며, 약관에 따른 분쟁의 조정범위와 벌칙에 대한 조항까지 명시되어있다. 온라인 경매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분쟁 시 각 경매사들의 약관에 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사업자의 의무이며 가장 실증적 법률이다.

3) 한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 정부의 지원체계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국내 미술품에 관련한 유통, 경매, 감정, 업종의 등록제 등의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딱히 결과물로 나온 내용은 없다. 2016년 국내 유명작가의 위작논란으로 인해 (가칭)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입법과정을 거쳐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발표하였으나, 이는 민간상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여부문제로 인해 미술품유통법(가칭)에 대한 강력한 미술계의 반발로 무산된 실정이다. 또한 가상화폐역시 국내에서는 금융상품이나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에서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가격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2023년 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으로 가상화폐를 관리감독할 계획인데 시장의 자금흐름을 살펴 불법 자금을 쫓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지 투자자를 위한 시장 질서 확립이나 자산 보호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용자를 보호하기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보안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문에서는 디지털경매에 관한 정부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안은 아래와 같다.

(1)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국내 미술 시장은 화랑·경매·감정 등 미술품 유통의 근간이 되는 주요행위자의 등록·신고가 제도화돼 있지 않고 미술품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법·제도적 장치가 없다(김정근, 2020). 2016년 12월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안)¹⁸⁾, 2017년 12월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 2019년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되었지만, 2016년도의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입법예고와 국회제출이후의 결과가 없으며, 이후 법률안들은 최종 20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자동으로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표-III-5>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의안명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0인 (2019.10.29.)	김영주의원 등 12인 (2019. 2. 27.)	정부 (2017. 12. 28.)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국회현황 (추천일자)	본의회 심의 의결 (2020. 5. 29.)	본의회 심의 의결 (2020. 5. 29.)	본의회 심의 의결 (2020. 5. 29.)
의결현황 (의결일자)	임기만료폐기 (2020. 5. 29.)	임기만료폐기 (2020. 5. 29.)	임기만료폐기 (2020. 5. 29.)
의안번호 (대안번호)	2023182	2018867	2011100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제20대

해당 법률안의 공통점은 미술시장 음성화에 따른 불법자금세탁, 비자금조성 통로로 사용, 미술유통업의 비 등록으로 인한 문제발생, 미술품 감정업자 및 관리센터의 부재로 인한 위작의 진위여부에 대한 불명확한 판단을 근거로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공정거래 확보라는 취지하에, 미술품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기타 미술품

18)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제2016-290호, 2016년 12월 13일.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36467>

판매업으로 분류하고자 했다.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화랑과 경매회사로 구분하고, 화랑업은 전시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전속작가 확보 및 육성기능을, 경매회사는 예술품의 2차 거래자로 등록해야하며, 전시공간이나 전속작가가 없이 미술품만 거래하는 곳은 기타미술품 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나누었다.

화랑업은 정부에서는 국가만능주의로 국내미술업계에서 발생하는 위의 문제들은 국가 관리의 부재를 원인으로 말한다. 국가가 작품 감정을 관리한다고 해서 민간감정기구나 국가감정기관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판단 오류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뜻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조상인, 2016). 업계에서는 예술업의 특수성을 고려 못한 규제라고 반발하였으며, 2017년 12월 7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새 문화정책의 기초를 전면으로 충돌한다고 말했다. 2017년 5월에 출범된 문재인정부는 문화정책 비전으로 ‘사람이 있는 문화’를 내세우고, 3대 가치를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으로 설정했다. 여기서 자율성이라 함은 “개인의 권리와 생각이 타인과 집단,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이와 함께 세계 문화예술정책 방향에 맞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른바 ‘팔길이 원칙(Arms-Length principle)’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캐슬린 김, 2018).

(2) 미술품 물납제

미술품물납제도는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금전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술품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프랑스는 Dation en Paiement, 영국은 Acceptance in Lieu라고 한다(양현미, 2017). 상속에 의해 발생한 납부세액에 한해 우리나라의 물납제도는 1950년 상속세법에 처음 도입된 이후, 조세형평성, 탈세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폐지하였다. 현재는 상속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만 물납을 인정하고 있는데, 미술품은 포함이며 부동산, 유가증권에 한정된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의 목적은 상속세를 현금 납부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학문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및 미술품을 국내에 보존함으로써 민족적 자부심, 문화향유권을 강화함에 있다(이재경, 2021). 미술품물납제가 2023년부터 시행됨에 있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물납심의위원회’의 신설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며, 이는 감정평가사와 세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가진 심의 기구가 설치된다. 이는 미술품에 대한

정부에서의 물적가치 인정 사례로 앞으로 디지털경매장 구성에 따른 출제품목의 자산가치 검증에 대한 일보라 볼 수 있다.

2021년 부터 새로운 기술과 시장으로 신규 진입한 블록체인기술이 접목된 경매는 예술작품만이 아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며, 누구나 알만한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였다.

(1) 국내 사상 첫 문화재 경매, 시민조직 국보DAO결성

올해 케이옥션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지정문화재 국보가 미술 경매에 나왔다. 간송미술관의 재정난으로 인해 삼국시대에 금동으로 만든 삼존불 입상인 국보 제72호의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金銅癸未銘三尊佛立像)과 국보 제73호인 금동삼존불감(金銅三尊佛龕)¹⁹⁾이다. 경매의 대상이 국가지정문화재인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경매라고는 볼 수 없으나, 경매의 과정에서 국보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활동이 주목할 내용이다. NFT레블루션:현실과 메타버스를 넘나드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에서는 DAO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이란 뜻이며 특정한 중앙집권 주체의 개입 없이, 즉 계층 구조적인 관리 없이 컴퓨터 코드와 프로그램에 의해 자체적으로 기능하는 자치적 조직이라고 말한다(성소라·롤프회퍼, 2021). 또한 DAO커뮤니티 멤버들은 DAO에 출자함으로써 각각 커뮤니티 토큰이라는 투표권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조직의 거버넌스 및 운영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즉 발행된 토큰을 소유한 참여자들에게만 권한을 주고 공간의 제약 없이 조직에 대한 안건제안 및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민이 모여 조직화된 탈 중앙화된 자율조직(DAO)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결성되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을 통해 NFT로 100억원을 모금하여, ‘국보NFT’를 발행하고 민팅을 클레이코인으로 전송하여, 국보경매에 참여 및 낙찰하고자했다. 다만 해당 DAO는 목표액 달성에 실패하여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이 법률상 불가능하여 NFT발행과 기부증서로 한정하여 투자가치가 떨어졌다. 불명확한 법적 지위 때문에 경매 낙찰이 성공하였더라도 DAO가 문화재수탁자로 지정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 미비하고, 각종 증여세, 법인세 문제 등 앞으로 디지털경매와 운영체계, 참여자의 법률적 정비의 필요성

19) 불상을 모시기위한 나무, 돌, 쇠 등을 깎아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작은규모로 제작

을 알 수 있게 된 사례이다.

(2) 선거에도 불어온 NFT 발행

정치NFT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미국 정계에서 처음 활용한 정치인은 미네소타 주지사에 도전했던, 의사출신이며, 공화당 소속의 전 미네소타주 상원의원인 스콧 켄슨(Scott Jensen)이다. 스콧 켄슨 전 의원 측은 NFT를 보유한 지지자들과 동반 스포츠경기 관람, 또 다른 디지털 콘텐츠 선제공 등의 배네핏을 제공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대부분의 신규 후원자들이 가상자산에 관심이 큰 젊은 지지층이었다고 한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이때 여당의 대표후보 이재명이 소속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오픈씨(OpenSea)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해당 후보의 새해 민생메시지를 NFT로 발행하여 경매를 진행하였다. 최고 경매가는 \$555(약 67만원)이었으며, 기간연장으로 \$1,000이 넘기도 하였다. 이후 NFT를 활용한 펀드형 모금을 진행 하였는데, 주식의 공모주 청약방식과 같은 ‘비례추첨’방식 도입하여 총 4만4천여명이 참여 할 수 있다. ‘이재명 펀드’는 대선자금 모금에 최초의 NFT기술을 적용한 사례이며, 목표액은 350억 원이었으나, 해당 금액은 NFT를 발행한지 1시간 49분만에 목표액이 달성되었다. 발행된 NFT의 수익금은 선거 후 국고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5월 20일에 원금에 약정이자를 더해 참가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약정이자 는 운용수익이 아닌 민주당당비에서 제공한다. 선거를 위한 후원금 마련을 위해 일반적인 은행대출이나 담보대출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모금을 하여, 금리상의 이익과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등의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지지층을 유입하기 위한 시도였다.

정치NFT발행은 이후 윤석열, 허경영, 박영선 등 경매를 진행하였지만 실질적인 정치인의 지지층인 중·장년층에겐 접근이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인지, 경매의 결과는 저조하였다. 가상자산으로 정치후원금을 받기위한 시도를 공표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인식을 바꾸고,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혁신적 실험이 필요한 때”라면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유아, 2021)

(3)신문사에서 진행한 독자자축 NFT서비스 경매

매경이코노미의 한 코너인 ‘축하합니다’는 출산, 결혼, 승진, 대학 입학 등 소중한 추억과 경사를 지면에 실을 수 있었다. 해당 신문사는 이를 다시 NFT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이벤트를 경매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시작가 375META(메타디움, Metadium)에서 최종 낙찰가 2500META(약 38만원)로 마감되었다. 최종낙찰자는 둘째아이 탄생소식을 소개로 첫 기사형 NFT를 발행하였고, 축하메시지를 함께 담았다(박수호, 2021).

위의 사례들 외에도 해외에서는 애플의 공동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Steven Paul “Steve” Jobs)가 20대에 쓴 입사지원서, 트위터 창업주이며 전 최고경영자인 잭 도시(Jack Patrick Dorsey)의 첫 번째 트윗도 NFT로 발행하여 거래되고 있다. 살펴보면 경매는 예술작품만이 아닌 실물경제의 모든 것을 NFT라는 고유의 기술을 사용하여 변환거래가 가능 한 것이다.

2. 미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 플랫폼 분석

다양한 미국의 온라인경매 플랫폼은 주로 운영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민간기업인 이베이는 온라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경매사이트 중 하나이며 고급보석류부터 옷 등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온라인 경매로 참여가 가능하다. SHOPGOODWILL(<https://shopgoodwill.com/home>)은 비영리단체가 만들고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경매 사이트이다. 장애인기금마련을 위한 소매점을 운영하는데 SHOPGOODWILL은 온라인경매를 진행한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130개 이상의 매장이 있으며 한국에서도 밀알재단에서 2011년에 도입하여 오프라인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원 채용과 교육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Government Surplus Auctions(<https://www.govdeals.com/>)과 Property Room(<https://www.propertyroom.com/>), IRS Treasury Auctions(<https://www.treasury.gov/auctions/irs/index.html>)는 정부기관과 경찰, 국세청의 잉여제품이나 압류, 압수품목을 경매로 진행한다. 이 외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품을 주 품목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글로벌 기업 소더비

와 크리스티가 있다.

1) 미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의 조직위상

(1) Sotheby's(소더비)

서점주인인 새뮤얼 베이커(1711~1778)의 457권의 고서적 경매로 영국 런던에서 설립(1744)된 베이커 경매 회사는 소더비의 전신이다. 1778년 새뮤얼 베이커 사후 조카 존 소더비(1740-1807)가 승계하여, 이때부터 '소더비'가 되었다. 현재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오일쇼크 때 미국기업이 되었고, 1988년 나스닥에 상장, 2016년 중국 20)타이강 생명보험이 13.52%의 주식을 매집해 최대 주주가 되었다. 1902년 특정대상자를 지정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는 첫 프라이빗 세일로 작품을 거래하였고, 2004년 8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며, 매출상승의 지속적인 증가는 경매회사의 한 부서에서 2012년 프라이빗 세일부서의 단독 운영으로 바뀌었다. 1827년부터 서적 경매만이 아닌 메달, 동전, 보석, 골동품, 미술품 등 여러 분야의 경매를 시작하였고, 나폴레옹의 소장품 중 책 일체도 그의 사후에 경매했다. 1958년 이브닝드레스를 입어야만 입장이 가능한 '골드슈미트' 컬렉션 경매를 런던에서 진행하였는데, 단순한 경매가 아닌 상류층을 위한 최고급 파티로 앤소니 퀸, 윈스턴 처칠 부인 등 1400명에 달하는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였고 인상주의의 걸작만을 경매에 붙였다(강옥선, 2018). 1964년 뉴욕에 본사를 둔 경매회사 파크버넷을 인수하면서 미국시장에 진출하였다. 2002년 소더비는 미국 인터넷 경매사이트 이베이(ebay)와 합작해 온라인 실시간 경매 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실패하였고, 2014년 하반기부터 소더비 뉴욕의 경매 대부분을 이베이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하며 소비자에게 예술품 경매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장하나, 2014). 자사 경매 사이트인 비드나우(BIDnow)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소비자는 경매에 참여하여, 실시간 입찰도 가능하다. 소더비는 경매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소더비 미술교육원(Sotheby's Institute of Art)'을 설립해 뉴욕과 런던, LA 및 온라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비학위 대학원 교육과정과 석사학위 과정을 고등학생들을 위한 시즌 과정 등을 운영

20) 중국 마오쩌둥(모택동:毛澤東)의 외손녀 쿵둥메이((孔東梅:공동매)의 남편 천둥성(陳東升:진동승)이 소유주이며, 이는 중국의 경매회사인 자더(嘉德:차이나가디언옥션)의 설립자 이기도하다.

하고 있다. 2021년부터 소더비는 NFT작품을 경매대상에 포함하였고,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경매낙찰대금을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제휴하여 지불 가능하게 하였다. 이후 홍콩에서 진행되는 100억원대의 다이아몬드경매에서도 암호화폐 결제를 진행했다. 이는 블록체인기술이 작품의 제작방식으로써도, 결제수단으로써도 실물경제에 적용되는 기능으로써의 역할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 크리스티(Christie's)

1766년 설립된 크리스티는 소더비와 비교하면 뒤늦게 시작되었지만, 최초의 미술품과 와인 경매는 크리스티에 의해 시작했다.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혁명정부가 몰락한 왕가와 귀족으로부터 압수한 보석과 소장 예술품을 주로 영국 크리스티를 통해 처분하면서, 크리스티는 일약 유럽의 최대 경매회사가 되었고, 1,2차 세계대전을 거쳐 1973년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나, 1999년 프랑스 사업가 프랑수아 피노(Francois Pinault)가 지분을 인수하며 개인소유의 회사가 되었다(원요환, 2016). NFT 미술품경매 역시 2020년 10월 크리스티가 먼저 시작하였고, 블록체인 홍보를 위해 결성된 시각예술 프로젝트 그룹 내 로버트 앨리스 프로젝트((Robert Alice Project)의 '마음의 초상화(Portrait of a Mind)'시리즈의 21번째 작품으로써, 영국 예술가 벤저민 젠틸라(Benjamin Gentili)와 비트코인 최초개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中本哲史)의 페인팅과 NFT의 형태로 구성된 블록21(Block 21)이 \$131,250에 낙찰되었었다. 해당 작품은 지리적으로 위치한 시간대 내에서 낮 동안에만 볼 수 있으며, 구매자는 작품의 핵심부분인 NFT 액세스 권한을 받아, 위치를 변경하여 작품을 제어 할 수 있다. 2021년 크리스티는 100개 이상의 NFT작품이 낙찰되었으며, 총 경매의 절반이상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뉴시스, 2021).

크리스티는 1978년 런던, 뉴욕, 파리에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미술사학, 감정법, 미술행정 등의 과정을 토대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고객을 위한 정확하고 신뢰 있는 정보와 조언을 위한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으로 미국·영국이 인정하는 대학원과정을 개설하여 외부인재의 스카우트 보다는 내부직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동기부여를 중점으로 둔다(정경민, 2021).

2021년 3월 크리스티가 처음으로 이더리움을 통한 결제를 허용하고 경매를 진행한 NFT(대체불가능토큰)경매는 활동명 '비플(beeples)'의 마이크 윈켈만(Michael

Joseph Winkelmann)의 이지미저장용 그래픽파일(JPG)형식의 디지털 아트 ‘에브리 데이즈:첫 5000일’(Exerydays-The First Days)이다. 해당 작품의 첫 경매 시작가는 100달러에 불과하였으나, 마지막 순간 180건이 넘는 입찰로 인해 경매시간이 연장되며, 최종 6930만 달러(약 785억)에 팔렸다. 이 작품은 작가가 2007년부터 매일 온라인에 게시해 온 사진을 모아 만든 콜라주 작품이다. 이런 경매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크리스티를 트위터나 틱톡 등 SNS활용하고 메타버스로 진출하기위해 준비하게 했다(Alexandra Bruell, 2021).

크리스티와 소더비는 작년 NFT 디지털아트 경매로 각각 \$1억5000만(한화 약 1800억원), \$1억(한화 약 1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NFT아트 경매시장을 가장 먼저 선점하고 이 부문에서 가치를 올리고 있는 크리스티에 이어, 소더비 또한 향후 NFT 경매시장이 더 확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소더비 메타버스’를 설립한바 있다(이영란, 2021).

2) 미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 법적 근거

앞서 말한 경찰의 온라인경매 사이트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자산을 공개 경매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주로 지역 경찰서 주차장에서 이루어졌으나 1999년부터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만들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190개 이상의 시장에서 수백만 명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경매사이트 이베이(www.ebay.com)는 199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었으며, 2021년 870억 달러 이상의 상품 거래가 진행되었다. 이베이는 자체 온라인매장을 구축하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장소를 제공하지만 자체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미국의 전자상거래지침에 따라 이러한 이베이를 기점으로 온라인경매 중개업체들은 제품의 신뢰도를 위한 자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시설을 갖추거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타 업체들과 제휴를 맺어 진행하기도 한다. 미국은 통일상법전에 미술품 거래 관련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1)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표-III-6>에 의하면 경매에 관한 판매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있다. 입찰상황에

대한 명시와 철회 기준, 경매사와 판매자 간의 경매에 대한 알림의무와 그에 따른 무효조항이 명시되어있다(박민혁 · 김연희, 2018).

<표-III-6> Uniform Commercial Code 제 2-338조

2-328. Sale by Auction

(1) 경매에 의한 판매에서, 상품이 각각으로 매겨지는 경우, 별도 판매의 대상이 된다.

(1) In a sale by auction if goods are put up in lots each lot is the subject of a separate sale.

(2) 경매는 경매인이 망치를 두드리고 낙찰을 선언하면 완료된다. 낙찰선언 전까지 사전 입찰을 진행하는 동안 입찰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인은 재량껏 입찰을 재개하거나 낙찰 료된 물품을 신고할 수 있다.

(2) A sale by auction is complete when the auctioneer so announces by the fall of the hammer or in other customary manner. Where a bid is made while the hammer is falling in acceptance of a prior bid the auctioneer may in his discretion reopen the bidding or declare the goods sold under the bid on which the hammer was falling.

(3) 상품이 명확한 조건을 갖추지 않는 한 이러한 판매는 보류된다. 경매에서 경매인은 낙찰을 선언할 때 까지 언제든지 상품을 회수할 수 있다. 유보 없는 경매에서, 경매인이 물건이나 상품에 대한 입찰을 요구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물건이나 상품은 철회될 수 없다. 어느 경우든 입찰자는 경매인의 매각 완료 선언 전까지 입찰을 철회할 수 있지만 입찰자의 철회로 이전의 입찰이 부활하지는 않는다.

(3) Such a sale is with reserve unless the goods are in explicit terms put up without reserve. In an auction with reserve the auctioneer may withdraw the goods at any time until he announces completion of the sale. In an auction without reserve, after the auctioneer calls for bids on an article or lot, that article or lot cannot be withdrawn unless no bid is made within a reasonable time. In either case a bidder may retract his bid until the auctioneer's announcement of completion of the sale, but a bidder's

retraction does not revive any previous bid.

(4) 만약 경매인이 고의로 판매자를 대신하여 입찰을 받거나, 판매자가 그러한 입찰을 하거나 청부하고, 그런 입찰에 대한 자유가 보류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구매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판매를 회피하거나 판매 완료 전에 마지막 선의의 입찰 가격으로 상품을 가져갈 수 있다. 이 하위 절은 강제 판매의 입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If the auctioneer knowingly receives a bid on the seller's behalf or the seller makes or procures such a bid, and notice has not been given that liberty for such bidding is reserved, the buyer may at his option avoid the sale or take the goods at the price of the last good faith bid prior to the completion of the sale. This subsection shall not apply to any bid at a forced sale.

출처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표-III-7>의 제2-313조에 의하면, 명시적 보증은 거래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 설명이나 견본은 상품과 관련하여 일치하여야함을 말한다. 판매자가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며, 구매자가 판매자의 약속의 확정에 판단해서물건을 구매했다면 명시적 보증으로 성립된다.

<표-III-7> Uniform Commercial Code 제 2-313조

2-313. Express Warranties by Affirmation, Promise, Description, Sample

(1) 판매자의 명시적 보증은 다음과 같다.

(1) Express warranties by the seller are created as follows:

(a) 판매자가 상품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한 거래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약속에 관한 확증은 상품이 확증이나 약속에 따른다는 명시적 보증을 만든다.

(a) Any affirmation of fact or promise made by the seller to the buyer which relates to the goods and becomes part of the basis of the bargain creates an express warranty that the goods shall conform to the affirmation or promise.

(b) 거래의 기초가 되는 상품 설명은 상품이 설명과 일치해야 한다는 명시적 보증을 만든다.

(b) Any description of the goods which is made part of the basis of the bargain creates an express warranty that the goods shall conform to the description.

(c) 거래의 기초가 되는 견본이나 모델은 그 상품의 전체가 견본이나 모델에 부합해야 한다는 명시적 보증을 만든다.

(c) Any sample or model which is made part of the basis of the bargain creates an express warranty that the whole of the goods shall conform to the sample or model.

(2) 판매자가 "보증서" 또는 "보증서"와 같은 공식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보증서를 작성할 구체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상품의 가치를 확인하거나 판매자의 의견이나 상품에 대한 추천으로 간주되는 진술은 보증서를 생성하지 않는다.

(2) It is not necessary to the creation of an express warranty that the seller use formal words such as "warrant" or "guarantee" or that he have a specific intention to make a warranty, but an affirmation merely of the value of the goods or a statement purporting to be merely the seller's opinion or commendation of the goods does not create a warranty.

출처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2) 전문감정실무표준(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전문감정실무표준(USPAP)이라고 하여 시가감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필수적인 실무 절차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시가감정은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 없이, 북미지역 8개의 감정단체들이 만든 자발적인 감정평가 기준이며, 이러한 표준은

미술품만이 아니라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 감정에도 적용된다.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도 USPAP을 준수하여 작성되지 않은 감정 보고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USPAP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2년에 한 번씩 개정된다(김보름, 2021).

3) 미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 정부의 지원체계

미국은 정부서비스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법률제정을 추진한다. 버몬트주와 애리조나주, 네바다주는 블록체인상의 기록이나 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거나 블록체인 거래를 면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델라웨어주는 주식 거래 명부에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미국 총무청은 조달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을 시험하고 있으며 연방 블록체인 커뮤니티와 아틀라스21) 포털을 운영 중이다(김지우, 2021). 지난해 11월 뉴욕 소더비 경매에 나온 미국 헌법 초판 사본 경매에 '컨스티튜션DAO'가 뛰어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임유경, 2022). 이 조직은 이더리움(ETH)을 모금하고 거버넌스 토큰 '피플(PEOPLE)'을 발행해 초판본의 관리 및 사용 방법 등을 투자자들에게 직접 결정케 했다. 이를 통해 초판본을 박물관에 전시하고 대체불가토큰(NFT)화해 판매한 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할 예정이었다. 컨스티튜션DAO는 불과 72시간 만에 4천만 달러를 모았지만, 간발의 차이로 낙찰에는 실패했다. 이는 DAO의 법적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문화재를 NFT로 발행해 공동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법률상 제도화되지 않은 새로운 쟁점들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황두현, 2022).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정을 현대에 맞게 개정하여 미국의 기간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바이든 행정의 주요법안 중 하나인 미국기반시설투자법(인프라법, Infrastructure Bill)승인으로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었다. 가상자산에 대한 채권의 가치를 측정할 때 그날의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시가평가(Mark-to-Market)를 적용함으로써 2023년부터 법정화폐로 매매되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모두 가상화폐를 점차적으로 인정하고 정부차원에서 승인해가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21) 미국 정부를 운영하거나 정책을 세울 때 최신 IT 기술을 적용한 사례를 공유하는 웹사이트

3. 영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 플랫폼 분석

1) 영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의 조직위상

(1) Phillips Auctioneers(필립스 경매장)

1796년 해리 필립스(Harry Phillips) 런던 웨스트민스터에 필립스경매장을 설립했다. 필립스는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의 저택에서 가져온 그림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eon Bonaparte)의 가정용품을 판매함으로써 국제적 인지도를 얻었으며, 비즈니스적 쇼맨십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버킹엄 궁전 내부에서 판매된 유일한 경매장이다. 1999년에 루이비통(LVMH Moët Hennessy Louis Vuitton)의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 Arnault)에 회사를 인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08년에 회사의 대부분의 지분은 럭셔리 소매 그룹인 Mercury의 소유주에 의해 인수, 뉴욕과 런던에 사옥을 리뉴얼 하였다.

세계 3대 경매 회사인 필립스는 뉴욕과 런던을 포함해 홍콩, 제네바, 모스크바, 파리, 홍콩 등에서 동시대 현대예술, 디자인, 보석 및 시계, 가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각 사무소는 비즈니스 개발, 위탁, 고객 관계, 현지 마케팅 이벤트에 중점을 두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아시아 전역에 필립스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예술경영지원센터, 2021). 필립스는 2021년 4월 첫 NFT미술품 경매를 진행하였으며, '매드 도그 존(Mad Dog Jones)'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캐나다 디지털 예술가 미카 도우박(Michah Dowbak)의 '리플리케이터(Replicator)'라는 50초 길이의 영상작품을 출품하였으며 \$4,144,000(한화 약 46억원)에 낙찰되었다.

(2) Bonhams(본햄스)

1793년 인쇄상인 토마스 도드(Thomas Dodd, 1771-1850)가 런던에 경매회사를 설립했다. 1817년 파산위기를 거쳐, 조지 존스(George Jones)에게 인계된 후 1850년대에 조지 보햄(George Bonham)과 파트너십을 맺고, Jones & Bonham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1879년 회사는 Frederick Charles Bonham과 그의 조카 William 간의

파트너십인 Messrs W & F C Bonham이 되었다. 2000년 Bonhams는 Christie's의 전 이사인 Robert Brooks가 1989년에 설립한 경매 회사 Brooks에 인수된 후 Bonhams & Brooks, 2001년 Phillips Son & Neale과 합병하여 Bonhams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Phillips는 합병된 회사의 새 본사가 되는 101 New Bond Street에 있으며, 2016 Bonhams는 최초의 온라인 전용 경매를 개최하여, 유럽 귀족 컬렉션의 시계와 손목시계는 100% 낙찰 되었다. 2018 년 9월, Bonhams는 영국 기반 사모펀드 회사인 Epiris에 인수되었다.

2) 영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 법적근거

영국은 소더비와 크리스티라는 양대 회사의 시작지인 만큼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국가이지만 정부에서의 공식적인 감정기구나 감정사 제도를 법률화 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국제적인 미술 유통시장 중의 하나이기에, 국가차원의 관리와 관여 없이 전문적인 미술 감정사들에 의해 자율적 감정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적 감정제도이지만 대형박물관이나 경매회사들이 참여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절차에 의해 감정이 이루어진다. 특히 국가 내 대학, 대형 박물관, 경매회사 등에 의해 미술 품감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감정평가사들을 양성하고 있다(임성윤·변승혁, 2020). 영국왕립평가사협회(RICS: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옥스퍼드 어센티케이션 감정전문회사(Oxford Authentication), 대영박물관 감정제도, 고미술 딜러 협회 (BADA : The British Antique Dealers'Association)가 대표적이며, 전문가집단의 조직적인 감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은 해당 감정을 신뢰하지만, 이들의 감정은 법정책임이 없으며, 정확성에 대해서 보장하지는 않는다. 경매인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의 법률적인부분이 아니라 각 전문가사이에서의 규정으로 고객에게 제공한다.

(1) 경매인 영업규제(Auctioneers : Restrictions on Trading)²²⁾

영국은 경매사의 자격규정과 경매사자격증, 이름게시 규정, 경매사의 권한 등에

22) Auctioneers and Agents regulation, 1986

대해 명시되어 있다. 최저 경매가격이 설정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와 최저 경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파는 경우에 대한 제한 규정도 설정 되어있다.

(2) 경매인과 대리인 규정 Auctioneers and Agents regulation

경매의 라이선스에 대한 명시, 경매 형태에 따른 수수료와 법 위반에 대한 기준과 처벌, 경매대행사의 의무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라이선스에 대해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박민혁, 김연희, 2018).

1. 라이선스, 라이선스의 갱신, 부활, 매니저 라이선스, 매니저 라이선스의 갱신이나 부활, 기업 라이선스, 기업 라이선스의 갱신이나 부활, 등록증서, 등록증서 갱신, 부활 등이 신청하는 사람은 명시된 양식을 사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규정된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라이선스나 등록증서 갱신 또는 부활 신청자는 신청서에 의도적 거짓이 있거나 중요한 문제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는 진술을 작성하는 것을 승인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신청서가 중요한 면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는 어떤 문제나 사항을 누락하거나 누락을 승인하면 안 된다. 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 신청서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와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한다.
3. 등록기관은 라이선스나 등록증서 갱신, 부활 신청자에게 어떤 개인이나 기업을 대리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무 상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나 신청을 목적으로 생성된 모든 정보나 진술서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기업 라이선스나 기업 라이선스의 갱신, 부활신청서는 기업의 대표 혹은 대리인, 매니저 또는 이사들이 작성해야 한다. 미국의 유관 법규에는 “뉴욕의 경매인(경매사)은 경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 거래상 설명에 관한 법(Trade Descriptions Act)

허위거래금지법(Prohibition False Trade Descriptions)은 유통과정에 있어 상품에 사실과는 다른 허위설명으로 해당 상품을 공급하거나 제안하는 경우 형사적 책임을 갖게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표-III-8> Prohibition False Trade Descriptions

허위거래금지(Prohibition False Trade Descriptions)

1 허위거래금지

1 Prohibition of false trade descriptions.

3. 허위거래명세서

3 False trade description.

(1)허위 거래 명세서는 기본내용에 어긋나는 거래 명세서이다.

(1)A false trade description is a trade description which is false to a material degree.

(2)거짓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품 설명, 즉 기본내용에 대해 허위일 수 있는 본법 제2조에 명시된 사항의 표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 설명은 허위 상품 설명으로 간주한다.

(2)A trade description which, though not false, is misleading, that is to say, likely to be taken for such an indication of any of the matters specified in section 2 of this Act as would be false to a material degree, shall be deemed to be a false trade description.

(3)거래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항의 표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표시로서 중한정도로 어긋날 수 있는 모든 것은 허위거래명세로 간주된다.

(3)Anything which, though not a trade description, is likely to be taken for an indication of any of those matters and, as such an indication, would be false to a material degree, shall be deemed to be a false trade description.

(4)어떤 상품이 어떤 사람이 지정하거나 인지하거나 어떤 사람의 승인에 의해 암시되는 표준을 준수한다는 허위 표시 또는 허위 표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러한 사람이 없거나 그러한 명시, 인식 또는 암시된 기준이 없는 경우 허위 거래로 간주된다.

(4)A false indication, or anything likely to be taken as an indication which would be false, that any goods comply with a standard specified or recognised by any person or implied by the approval of any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a false trade description, if there is no such person or no standard so specified, recognised or implied.

출처 : 영국법령(Legislation.gov.uk)

3) 영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 정부의 지원체계

과학부를 중심으로 2016년에 블록체인을 국가적으로 도입할 것을 선언하고 각종 정부 서비스에 적용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과학부는 2016년 ‘분산원장기술: 블록체인을 넘어(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eyond block chain)’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블록체인 로드맵과 지방 정부 실증사업 추진 지원, 명확한 규제 마련, 산학협력 과 민간협력 지원 등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은 또한 2017년 마련한 제2 차 투자관리 전략에서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산업 육성을 명시하였다(김지우, 2021).

4. 프랑스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 플랫폼 분석

프랑스에서는 1254년부터 경매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성 루이왕이 1254년 내린 칙령에 의해서 미술품 경매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갖추어지게 되었

으며, 근대적 경매제의 정착은 1552년 앙리 2세의 칙령에 기초하여 경매사들이 전문관료로 임명되었다. 프랑스의 감정제도는 개인적 활동을 하는 감정사들이 감정을 진행하고 있고 단체 및 기관은 정보의 전달 및 감정 활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만 담당하고 있다. 감정사 네트워크인 CNES(Chambre Nationale des Experts Spécialisés en Objets d'Arts et deCollection)와 국립 예술전문감정사 연합(FNEPSA:: Fédération Nationale des Experts Professionnels Spécialisés en Art)이 대표적인 전문 감정활동을 진행하는 곳이다.

1) 프랑스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의 조직위상

유럽연합(EU)은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2020년 12월에 발표했다. 해당 회원국은 온라인플랫폼에 업로드된 콘텐츠를 모니터링을 한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집행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유해한 콘텐츠를 방치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재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인종, 성별, 종교, 세대 등에 대한 발언이나 테러리즘 선전,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콘텐츠가 발견되는 즉시 이를 삭제해야 한다. 적용대상인 검색엔진과 SNS, 온라인 쇼핑몰, 앱스토어 등이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²³⁾ 이는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물품에 대한 부분만이 아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도 고객을 보호 할 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경매시장의 유통과정에도 적용 할 수 있다.

(1) Hôtel Drouot(드루오 경매장: 오텔드루오)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Hôtel Drouot(오텔드루오)는 1852년에 설립된 정부 후원의 경매회사이다. Drouot Group은 70여개 이상의 군소 경매회사가 연합해 만든 경매회사이다. 관련 부서에 따라 타잔 (Tajan), 피에르 베르제 에 어소시에이츠(Pierre Bergé et Associés), 아흐큐리알 (Artcurial), 피에자(Piasa)등이 자회사로써 속해 있는데 그중에서 오텔드루오의 규모가 가장 크다. 오텔드루오는 화상들의 투기와 내

23) 디지털 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 단비뉴스, 2022년 4월 30일

부거래를 통한 가격 조작 등의 관행을 낳았고, 그 과정에서 화상들 간의 그리고 화상들과 자본가들과의 연계가 이루어졌다. 또한 경매 회사에서 비평가와 역사학자들을 동원해서 작가를 홍보했던 경험을 통해 화상들이 비평가와 연계하는 “달러-비평가 제도”가 만들어지는 단초가 되었다(이승현, 2017).

드루오 그룹의 디지털 플랫폼인 Drouot.com은 라이브중계 및 라이브 경매 참여, 온라인 전용 작품 판매 및 실시간 구매와 같은 디지털 거래를 제공하며, 대략 2백만 개의 물건이 600개 경매소에서 제공된다.

(2) artcurial(아르큐리알)

Artcurial은 2002년 프랑스 경매 시장이 경쟁의 문을 열었을 때 설립되었으며 빠르게 프랑스 최고의 경매 회사가 되었다. 주로 파리, 모나코, 마라케시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경매장은 2021년에 1억 6900만 유로에 가까운 판매액을 기록했다. 주로 장식 예술, 수집가의 자동차, 보석, 중요한 시계 및 시계, 고급 와인 및 증류주 등 주요 특산품을 취급한다.

2) 프랑스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 법적근거

(1) 경매사 연합회, 공공예술 경매사 자격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인 공공 예술 경매사의 경우 서양 예술사를 전공한 전문 엘리트 양성 교육 기관인 Grandes écoles(그랑제콜)²⁴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미술시장에 대한 사법적인 이해와 법규 등의 학습이 전제 조건인 분야이기 때문에 예술사와 법학 공동 이수는 필수 불가결한 선결 조건이다. 민법, 프랑스 상법, 공증법, 유럽 연합 상법까지 미술 시장에서 필요한 사법적 제반 사항에 대한 교육 이수가 없이는 도전하기 힘든 분야이다. 법학과 예술사(서양예술사, 조형예술, 고고학 등)를 공동 이수한 학위 졸업자는, 일 년에 한번, 필기와 구두시험으로 이루어진 경매사 인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기회는 삼년동안 3번인데, 그 이상은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2년동안의 집중 인턴 과정을 거친 후 경매 심의회(Conseil des ventes)

24) 프랑스 특유의 소수정예 고등교육기관 체계를 가리키는 용어로, 프랑스 사회에서는 일반 공립 대학교(프랑스어: Université)와 구분되어 있다. 위키백과

의 평가에 의해 자격증을 부여 받은 후부터 일반 경매 회사(공공 매매)에서 경매사로서 일하거나 일반 경매회사를 창립할 수 있다. 다만 사법 경매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따로 자격 면허 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이상미, 2012).

(2) 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제품계약일치 보증 및 제품결함 책임에 관한 법률 (Loi n° 2006-406 du 5 avril 2006 relative à la garantie de conformité du bien au contrat due par le vendeur au consommateur et à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법률 제1조는 「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제품의 매매계약 일치 보증에 관한 법률 명령(2005. 2. 17)」을 승인한 것이며, 제2조는 “리스업자를 제외한 모든 판매자 또는 공급업자는 제조업자(생산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조업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제품의 안전 결함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판매자의 제품보증에 관한 2005년 2월 17일의 신설된 법률명령은 전기, 법원이 매각하는 동산 및 경매 재화(goods)를 제외한 모든 소비재에 대한 “제품의 매매계약서 일치”의 개념이며, 제품결함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민법전」 제1641조 내지 제1649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la garantie des défauts de la chose vendue)에 따라 ‘매매계약취소 원인이 되는 결함(vices rédhibitoires)’을 발견한 날로부터 2년²⁵⁾이내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

<표-III-9> 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제품계약일치 증 및 제품결함 책임에 관한 법률

LOI no 2006-406 du 5 avril 2006 relative à la garantie de conformité du bien au contrat due par le vendeur au consommateur et à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제1조

no 2005-136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지불해야하는 계약에 대한 상품의 보증에 관한것이다.

25) 민법전 제1648조

Article 1er

L'ordonnance no 2005-136 du 17 février 2005 relative à la garantie de la conformité du bien au contrat due par le vendeur au consommateur est ratifiée.

제2항

민법전 1386-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금융업자를 제외한 판매자와 그 외 유통업체는 제품의 안정성문제에 관해 생산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책임이 발생한다. 단, 피해자의 요청을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생산자나 유통자를 미지정시에는 제외된다.

Article 2

I. –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386-7 du code civil est ainsi rédigé :

« Si le producteur ne peut être identifié, le vendeur, le loueur, à l'exception du crédit-bailleur ou du loueur assimilable au crédit-bailleur, ou tout autre fournisseur professionnel, est responsable du défaut de sécurité du produit, dans les mêmes conditions que le producteur, à moins qu'il ne désigne son propre fournisseur ou le producteur, dans un délai de trois mois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a demande de la victime lui a été notifiée. »

출처 : 프랑스법령(legifrance.gouv.fr)

(3) 기업성장법(Loi PACTE)²⁶⁾

PACTE법률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제약을 완화하는 기업친화적제도이다. 2018년 이전까지 가상화폐법률은 과세 처리 규정이었으나, 최근 블록체인과 ICO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바뀌었다. 2019년 5월 22일 제정된 해당 법은 Monetary and Financial Code(통화및금융법)을

26) 기업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법(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개정하는 조문으로, 가상화폐 발행·거래업체에 공인 운영 허가를 부여하고 발행·거래업체, 자산운용사, 투자자에게는 얻은 수익에 대한 납세 의무를 명시하였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표-III-10> 기업성장법(Loi PACTE)

PACTE LAW PROJECT on the growth and transformation of enterprise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법률 프로젝트

LAW PROJECT on the growth and transformation of enterprise

(Final Text, TEXT CARRIED No. 258; 2019.5.22. 법안 성립)

통화 및 금융법 제621-13-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첫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작성된 I로 대체한다.

« I.-금융시장청장은 수령일을 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1) 제532조의1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은 온라인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제531조의2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532조의16부터 제532조의22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2°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 증권 또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업자:

« (a) 해당 항목은 L. 532-1에 따라 등록되지 않으며, L. 531-2에 포함되지 않으며, L. 532-16부터 L. 532-22까지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b) 그들은 L. 546조 (1) 및 L. 547-4조 (1)에 따라 참여형 투자 고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 3° L. 551조 제1항 또는 제2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생명 연금에 가입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것을 대중에게 제안하는 운영자는 홍보 커뮤니케이션이나 창업에 앞서 금융 시장 당국에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L.551-3.« 4° 제L.54조의10제3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금융시장청에 의해 등

록되지 않은 제L.54조의10제3항의 범위 내의 사업자

« 5°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로 정보를 유포하거나 L. 54-10-5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허가되었음을 시사하는 이름, 회사 이름, 광고 또는 기타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제54-10-2조의 의미 내에서 디지털 자산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6°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가 있는 정보를 유포하거나, L. 552-4조에 규정된 비자를 획득했음을 암시하는 이름, 회사 이름, 광고 또는 기타 절차를 사용하는 제 552조 제3항의 의미 내에서 대중에게 토큰을 제공하는 사업자

« 이 통지는 제5권 제7장 제3장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이들 서로 다른 사업자가 부과하는 제재를 상기한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적용된 금지사항을 준수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 8일 이내에 관찰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L'article L. 621-13-5 du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est ainsi modifié :

1° Le premier alinéa est remplacé par un I ainsi rédigé :

« I.-Le président de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dresse, par tout moyen propre à en établir la date de réception, une mise en demeure aux opérateurs suivants :

« 1° Les opérateurs offrant des services d'investissement en ligne non agréés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532-1, ne figurant pas au nombre des personnes mentionnées à l'article L. 531-2 et n'entrant pas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s articles L. 532-16 à L. 532-22 ;

« 2° Les opérateurs proposant en ligne des offres de titres financiers ou de bons de caisse qui satisfont aux conditions suivantes :

« a) Ils ne sont pas agréés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532-1, ne figurent pas au nombre des personnes mentionnées à l'article L. 531-2 et n'entrent pas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s articles L. 532-16 à L. 532-22 ;

« b) Ils ne sont pas immatriculés en qualité de conseillers en investissements participatifs conformément aux articles L. 546-1 et L.

547-4-1 ;

« 3° Les opérateurs proposant au public de souscrire des rentes viagères ou d'acquérir des droit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1° du I ou au II de l'article L. 551-1 sans avoir, préalablement à toute communication à caractère promotionnel ou à tout démarchage, soumis à l'examen de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les documents mentionnés à l'article L. 551-3 ;

« 4° Les opérateur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L. 54-10-3 qui ne sont pas enregistrés par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même article L. 54-10-3 ;

« 5° Les opérateurs fournissant des services sur actifs numériques au sens de l'article L. 54-10-2 qui diffusent des informations comportant des indications inexactes ou trompeuses ou utilisent une dénomination, une raison sociale, une publicité ou tout autre procédé laissant croire qu'ils sont agré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L. 54-10-5 ;

« 6° Les opérateurs procédant à une offre au public de jetons au sens de l'article L. 552-3 qui diffusent des informations comportant des indications inexactes ou trompeuses ou utilisent une dénomination, une raison sociale, une publicité ou tout autre procédé laissant croire qu'ils ont obtenu le visa prévu à l'article L. 552-4.

« La mise en demeure rappelle les sanctions encourues par ces différents opérateurs au titre du chapitre III du titre VII du livre V et les dispositions du II du présent article. Il est enjoint à l'opérateur de respecter l'interdiction qui lui est applicable et de présenter ses observations dans un délai de huit jour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e la mise en demeure. »

;

L. 552-2.-이 장의 목적상, 디지털 형태로 재산의 소유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공유 전자 기록 장치를 통해 발행, 등록, 보존 또는 이전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무형 재산 토큰을 구성한다.

« Art. L. 552-2.-Au sens du présent chapitre, constitue un jeton tout bien incorporel représentant, sous forme numérique, un ou plusieurs droits pouvant être émis, inscrits, conservés ou transférés au moyen d'un dispositif d'enregistrement électronique partagé permettant d'identifie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le propriétaire dudit bien.

출처 : 프랑스법령(legifrance.gouv.fr)

3) 프랑스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 정부의 지원체계

2000년대 후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프랑스를 '스타트업의 나라'(startup nation)로 성장시켜 나가자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2017년 말부터 프랑스는 각 정부부처와 의회, 업계 등 시민사회의 리더들로 구성하여,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했다.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은 2017년부터 ICO 연구조사 네트워크(UNICORN) 구성했고, ICO를 비롯해 디지털자산 취급에 대한 연구와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규제체계를 구상하여 PACTE법안에 포함시켰다. 범국가적인 종합프로젝트법안은, 2018년 6월 내각회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됐고, 2019년 5월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2022년 4월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 프랑스와 유럽이 NFT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통일된 명확한 법적규범이 필요하고, 불법거래에 대해서 대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이해봉, 2019).

5. 중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 플랫폼 분석

1992년 중국 상하이에 첫 국영경매회사인 朵云軒(뉘윈쑤엔, DuoYunxuan)이 설립되었으며 93년부터 본격적인 경매를 진행하였다. 해당 회사는 경매, 아트상품 판매,

골동품, 미술 중개, 온라인판매, 미술교육, 전시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97년 발표된 경매법 이후 급속하게 발전된 중국경매는 수목화나 골동품이 수집상품이었으나 경제호황기와 더불어 서양 미술과 근대 미술의 수집 붐이 시작되었다. 2013년 중국 정부가 해외 경매사의 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상하이로 아시아 최대 미술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2013년 9월 크리스티가 상하이 지점을 개소하여 첫 경매를 개최했고, 3개월 후 소더비가 베이징에서 경매를 열었다. 10월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중국 현대미술가 쟁판즈의 ‘최후의 만찬’이 330만 달러, 우리 돈 250억 원에 판매됐다. 2004년을 기점으로 세계 미술 시장의 싹을 틔우며 떠오른 중국은 2010년 세계 미술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경매 시장에서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²⁷⁾ 그 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타오바오’는 미술품 경매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김지훈, 2014), 미국 캘리포니아주 ‘갈레리에 미카엘’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파블로 피카소’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경매를 시작으로, 2017년 대형항공기 보잉747과 보잉400 경매, 2019년도 광棍節에서는 1만여 채의 중국 주요도시 20여곳의 아파트·단독주택·오피스텔, 상가 등 경매, 2021년에는 ‘블록체인 디지털 저작권 및 자산 거래(Blockchain Digital Copyright and Asset-Trade)’ 라는 NFT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하여 NFT기반 블록체인 디지털 저작권과 자산거래를 위한 공간을 지원을 시작했다.

1) 중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의 조직위상

(1) 차이나가디언옥션, 자더(China Guardian Auctionsn, 嘉德)

20년 전 소더비 홍콩경매장에 몰래 들인 촬영장비로 촬영 후 자신의 신생경매회사에 적용한 차이나 자더(嘉德, 영어명 Guardian)경매(1993)회사의 본사는 베이징에 있다. 이후 본격적인 예술품경매회사로 등장하여 중국 골동품과 서예, 수목화 등 주로 취급했으나, 근대 및 현대 예술품으로 범위를 넓혔다. 바오리(保利, 영어명 Poly) 중국군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국영기업으로 분류되나, 민간 기업임을 주장한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부정·부패·관료주의 정책으로 고가 작품 거래가 위축됐다가 작년부터 시장이 살아나고 있으며, 미술거래시장의 규모는 20조원에 달

27) 유선애, *The Next Generation*, 매거진 럭셔리, 디자인하우스, 2014년 2월호

하며 34%로의 점유율로 미국 점유율 27%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2) 폴리옥션(POLY AUCTION, 北京保利國際拍賣有限公司)

폴리옥션은 2012년 Poly Culture Group Corporation Limited가 설립한 예술품 경매회사다. Poly Culture Group의 자회사인 Beijing Poly International Auction은 중국 최대의 경매장이며 전 세계적으로 중국 미술품 경매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 연간 총 거래액 121억 위안, 한화 약 2조1540억원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Poly Culture Group Corporation Limited는 2014년 3월 홍콩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였고, 2021년 HK\$26억, 한화 약 4조 1879억원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 골동품·보석 경매·근현대 예술 경매·서화 경매 등 다양한 예술품 분야에서도 거래액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Poly Auction Hong Kong은 경매 행사 외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전시회 및 행사, 저명한 수집가 및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선별 경매, 온라인 판매 및 NFT 디지털 예술 경매를 통해 예술, 문화 및 기술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폴리옥션의 모 기업인 폴리그룹(China Poly Group Corporation, 中國保利集團公司)은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소속 중앙기업으로 1993년 2월에 설립했다. 방위산업·부동산·에너지·무역·컨설팅·호텔·극장·예술품 거래 등 분야에서 약 90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집단이다(한진형, 정연두 외 1, 2012).

2) 중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 법적근거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19년 12월 확산되기 시작한 COVID-19로 인해 보복소비심리와 사람간의 접촉이 최소화된 사회적분위기로 인하여 오프라인 제품 유통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소비시장이 전환되었다. 2021년 기준 중국 인터넷 사용자는 10억 3,200만 명이며, 인터넷 보급률은 73.0%이다. 중국의 온라인플랫폼마켓은 기업형 전자상거래 업체만이 아니라 개인도 등록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광고, 지적재산권 침해상품, 제품의 품질과 수량을 보장할 수 없고, 가짜제품을 섞어 파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중국정부의 미비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처는 중국발 제품에 대한 신뢰문제가 자주 야기되며, 이는 국제분쟁을 일으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주도로 2016년도 4월 전자상거래법 초안이 제출된 후 수정·보완되어 2019년 1월1일 중국에서 처음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이 시행되었다(김진규·이재성, 2022).

(1)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中牟人民共和國主席令)

중국 내 전자상거래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범화하며,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전자상거래경영자 제1절 일반규정 제 2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서 전자상거래 경영자와 플랫폼 경영자의 정의와 거래범위를 명시하며, 지켜야 할 법규에 대하여 정리되어있다. 제3장은 전자상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장은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의부터 법률적 책임까지 명시되어있다. 그중에 제2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요구하는 법률적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발췌하였다.

<표-III-11>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27~ 46조

중화인민공화국전자상거래법 제2장 전자상거래경영자 제2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中牟人民共和國主席令 第2章 起子商分經普者 第2节 宅子商分平合經普者

제27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에 진입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신청하는 경영자에게, 신분·주소·연락처·행정허가 등의 진실된 정보를 요구하고, 검사·등기를 진행하고, 등기파일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에 진입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경영 이용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절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第二十七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要求 申请进入平台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的经普者提 交其身粉、地址、联系方式、行政许可等真实信息, 进行核验、登记, 建立 登记档案, 井定期核 驗更新。

电子商务平台经营者为进入平台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的非经用户提供服务，应当遵守本节有关规定。

제29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보에 본 법 제12조·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정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第二十九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发现平台内的商品或者服务信息存在违反本法第十二条、第十三条规定情形的，应当依法采取必要的处置措施，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제30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기술적인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인터넷의 안전 및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하고,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사이버 안전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전자상거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인터넷 안전사건에 대한 응급대비책을 세워야 하며, 인터넷 안전사건 발생 시 즉시 응급대비책을 개시하고 상응하는 보완조치를 취하고 관련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第三十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采取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保证其网络安全，稳定运行，防范网络违法犯罪活动，有效应对网络安全事件，保障电子商务安全。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制定网络网络安全事件应急预案，发生网络安全事件时，应当立即启动应急准备预案，采取相应的补充措施，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제31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에 게시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정보·거래정보를 기록·보존하고, 정보의 완전성·비밀성·사용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상품 및 서비스의 정보·거래정보 보존기간은 거래가 완성된 날로부터 3년 이상이다 ; 법률·행정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第三十一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记录、保存平台上发布的商品和服务的信息、交易信息，并确保信息的完整性、保密性、可用性。商品和服务信息、交易信息保存时间自交易完成之日起不少于三年；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제32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공개·공평·공정의 원칙에 따라 플랫폼 서비스 협정 및 거래규칙을 제정하고, 플랫폼 진입과 퇴출·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보장·소비자 권익보호·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第三十二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遵循公开、公平、公正的原则，制定平台服务协议和交易规则，明确进入和退出平台、商品和服务质量保障、消费者权益保护、个人信息保护等方面的权利和义务。

제35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서비스 협약·거래규칙 및 기술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의 플랫폼 내에서의 거래·거래가격·기타 경영자와의 거래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가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해서는 아니 되며,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第三十五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不得利用服务协议、交易规则以及技术等手段，对平台内经营者在平台内的交易、交易价格以及与其他经营者的交易等进行不合理限制或者附加不合理条件，或者向平台内经营者收取不合理费用。

제36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서비스 협약과 거래규칙에 의거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의 법률·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서비스 일시정지 또는 중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신속히 공고해야 한다.

第三十六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依据平台服务协议和交易规则对平台内经营者违反法律、法规的行为实施警示、暂停或者终止服务等措施的，应当及时公示。

제37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그 플랫폼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자체 영업 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자체영업 업무와 플랫폼 내 경영자가 진행하는 업무를 현저한 방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아니 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자체영업 업무로 표시하는 업무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상품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민사책임을 진다.

第三十七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在其平台上开展自营业务时，应当以显著方式区分

分标记自营业务和平台内经营者开展的业务，不得误导消费者。电子商务平台经营者对其标记为自营的业务依法承担商品销售者或者服务提供者的民事责任。

제38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인체·재산의 안전보장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해당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질·자격에 대한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소비자에 대해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第三十八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知道或者应当知道其在平台内经营者销售的商品或者提供的服务不符合保障人身、财产安全的要求，或者有其他侵害消费者合法权益行为，未采取必要措施的，依法与该平台内经营者承担连带责任。对关系消费者生命健康的商品或者服务，电子商务平台经营者对平台内经营者的资质资格未尽到审核义务，或者未履行对消费者安全保障义务的，给消费者造成损害的，应当依法承担相应责任。

제39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건전한 신용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신용평가규칙을 공시해야 하며, 소비자를 위해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三十九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建立健全信用评价制度，公示信用评价规则，为消费者提供对平台内销售的商品或者提供的服务进行评价的途径。

电子商务平台经营者不得删除消费者对平台内销售的商品或者提供的服务的评价。

제41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적재산권 보호규칙을 제정하여, 지적재산

권 권리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

第四十一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建立知识产权保护规则, 与知识产权权利人加强合作, 依法保护知识产权。

제42조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삭제·차폐·접속차단·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다. 통지에는 권리침해를 구성하는 초보적인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후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통지를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의 확대 부분에 대해 플랫폼 내 경영자와연대책임을 진다. 잘못된 통지로 인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가 손해를 본 경우, 법에 따라민사책임을 진다. 악의적으로 잘못된 통지를 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손실이 발생된 경우, 배로 배상책임을 진다.

第四十二条 知识产权权利人认为知识产权受到侵害的, 有权通知电子商务平台经营者采取删除、屏蔽、断开儀接、終止交易和服务等必要措施。通知应当包括构成侵权的初步证据。

电子商务平台经营者接到通知后, 应当及时采取必要措施, 并将该通知转送平台内经营者。未及財采取必要措施的, 对损害的扩大都分与平台内经营者承担民事责任。因通知借误造成 平台内经营者损害的, 依法承担民事责任。恶意友出借误通知, 造成平合内经营者失的, 加倍承担賠償责任。

제46조 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서비스 외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협약 및 거래규칙에 의해 경영자간의 전자상거래를 위해 참고·물류·지불계산·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경영자간의 전자상거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률·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경쟁가격집중, 중개 등 집중거래 방식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고, 표준화 계약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第四十六条 除本法第九条第二款规定的服务外，电子商务平台经营者可以按照平台服务协议和交易规则，为经营者之间的电子商务提供仓储、物流、支付结算、交收等服务。电子商务平台经营者为经营者之间的电子商务提供服务，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不得采取集中竞价，微商等集中交易方式进行交易，不得进行标准化合约交易。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2) 중화인민공화국경매법(中華人民共和國拍賣法)

경매에 관한 행위를 규범화하고 경매질서를 위한 활동과 권익보호를 위해 본 법은 제정되었다. 대상지는 중국내 경매활동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있고, 경매물품과 경매인에 대한 자격기준<표-11>, 경매 절차, 수수료, 법률적 책임 등이 명시 되어 있다.

<표-III-12>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 제 10조~ 24조

중화인민공화국경매법 제3장 경매당사자 제1절 경매인

中华人民共和国拍卖法 第三章 拍卖当事人 第一节 拍卖人

제10조 경매인(拍賣人)이라 함은 본법과<<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公司法: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경매활동에 종사하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第十條

拍賣人是指依照本法和<<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設立的從事拍賣活動的企業法人。

제11조 경매기업은 구를 설치한 시에 설립할 수 있다. 경매기업 설립 시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경매업 관리부문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영업집조(營業執照,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를 수령하여야 한다.**第十一條** 拍賣企業可以在設區的市設立。設立拍賣企業必須經所在地的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負責管理拍賣業的部門審核許可，并向工商行政管理部门申請登記，領取營業執照。

제12조 경매기업 설립의 필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 (一)등록자본금 인민폐 100만 위안 이상 보유
- (二)자체의 명칭, 조직기구, 주소, 정관
- (三)경매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경매사(拍卖师) 및 인원
- (四)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규정에 부합되는 경매업무규칙
- (五)경매업 발전을 위한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조건
- (六)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第十二条 设立拍卖企业, 应当具备下列条件:

- (一) 有一百万元人民币以上的注册资本;
- (二) 自己的名称、组织机构、住所和章程;
- (三) 有与从事拍卖业务相适应的拍卖师和其他工作人员;
- (四) 有符合本法和其他有关法律规定的拍卖业务规则;
- (五) 符合国务院有关拍卖业发展的规定;
- (六) 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제13조 문화재 경매업무를 경영하는 경매기업은 등록자금 인민폐 1,000만 위안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문물 경매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원이 있어야 한다.

第十三条 拍卖企业经营文物拍卖的, 应当有一千万元人民币以上的注册资本, 有具有文物拍卖专业知识的人员。

제14조 경매활동은 경매사가 주관하여야 한다.

第十四条 拍卖活动应当由拍卖师主持。

제15조 경매사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 (一)전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과 경매전문지식 소유자
 - (二)경매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三)양호한 품행 소유자
-

공직 제명처벌 또는 경매사자격증 회수처벌을 받은지 5년 미만인 자 또는 고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경매사를 담임할 수 없다.

第十五条 拍卖师应当具备下列条件：

- (一) 具有高等院校专科以上学历和拍卖专业知识；
- (二) 在拍卖企业工作两年以上；
- (三) 品行良好。

被开除公职或者吊销拍卖师资格证书未满五年的，或者因故意犯罪受过刑事处罚的，不得担任拍卖师。

제16조 경매사 자격심사는 경매업종협회(拍賣行业协会)가 통일적으로 실시한다.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경매업종협회에서 경매사 자격증서를 교부한다.

第十六条 拍卖师资格考核，由拍卖行业协会统一组织。经考核合格的，由拍卖行业协会发给拍卖师资格证书。

제20조 경매인은 수탁한 경매표적을 위탁자의 동의 없이 기타 경매인에게 위탁하여 경매하지 못한다.

第二十条 拍卖人接受委托后，未经委托人同意，不得委托其他拍卖人拍卖。

제22조 경매인 및 그 인원은 경매인의 신분으로 자기가 실시하는 경매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며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입찰하게 하지 못한다.

第二十二条 拍卖人及其工作人员不得以竞买人的身份参与自己组织的拍卖活动，并不得委托他人代为竞买。

제23조 경매인은 자기가 실시하는 경매활동에서 자기의 물품 또는 재산권을 경매하지 못한다.

第二十四条 拍卖成交后，拍卖人应当按照约定向委托人交付拍卖标的的价款，并按照规定将拍卖标的移交给买受人。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3) 중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 정부의 지원체계

1995년 해관총서회(海關總署會) 동국가문화물부가 연구 및 제정 사업을 시작하고 「임시 입국 문화재의 재반출 관리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중국 문화재 사업의 역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中國文物藝術品拍賣25周年報告, 2019). 같은 해 6월 중국경매업계협회가 정식으로 조직화되어 출범했다. 1996년 중국정부는 문화재와 미술품을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경매법을 법제화하였다. 2000년 인쇄기업의 야창그룹이 개설한 야창예술망(www.artron.net)은 예술가 DB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관리, 출판, 전시회 등을 아우르는 예술부문 종합서비스의 장으로 중국 최대 예술플랫폼이다. 정부는 중국미술품과 문화재관리를 위한 단계별 법제화²⁸⁾를 통해 예술품경매의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였고, 중국경매업계협회는 해당 법을 바탕으로 「문화재·미술품 경매업 종사자 직업 수칙」, 「문화재·미술품의 권리 및 의무 대상 심사결정 지도 규범」, 「문화재·미술품 경매의 권리 및 의무 대상 보존 관리 지도 규범」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였다.

중국정부는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래 및 채굴을 단속하고 있다. 투기 및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기업에서 발행한 NFT구매는 가능하지만, 재판매로 인한 수익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 되어있다. 이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대형 기업들은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²⁹⁾을 이용하여 중국 당국의 규제 할 대상에서 벗어난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전면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의 국력 상승과 군사력 강화의 핵심기반으로 인식하고, 시진핑 주석의 발언과 정부보고 등을 통해 국가전략기술로 공식화하면서 중앙, 지방정부는 물론 금융계와 산업계 등의 지원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5년 빅데이터가, 2017년 인공지능이 국가전략으로 공식 규정된 이후, 블록체인기술 또한 시진핑주석의 지시로 국가전략으로 공식 편입되었다(張夏明 2019, 49). 2019년 10월 24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블록체인 기술발전 현황과 추세 전망(區塊鏈技術發展現狀和趨勢進行)’을 주제로 한 집체학습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28)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2002), 문화재 경매관리 집행규정(2003), 문화재 경매관리 집행규정(2007) 등

29)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 없이 지갑을 통해 개인 간의 거래

“블록체인을 중국 핵심기술 자주혁신의 중요한 돌파구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주요 방향을 명확히 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기술에 집중하여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차정미, 2021).

블록체인이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 핵심 기술 분야라는 인식 하에 중국이 전 세계 개발자와 사용자가 참여하고 사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먼저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중국국가정보센터와 유관 기관들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9년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백서’와 2020년 4월 공개된 두 번째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백서’ 모두 중국의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가 중국의 혁신으로 만들어지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인프라 네트워크가 될 것이며 이 공간은 중국이 통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³⁰⁾ 한마디로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책기조는 한편으로는 기술탐색을 장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응용 기술에 대한 규제 의 틀을 마련하여 정보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 있다.

6. 분석결과

국내 예술품 경매시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과 비교하면, 법률적인 정비보다는 필요에 의한 자생적인 경매회사의 규정이 명시되어있고 이에 따라 운영된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문화예술디지털 경매에 따른 법률이 상세하게 명시되어있지는 않다. 프랑스는 경매사 자격을 보유한 국가공무원만 경매진행이 가능하며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감정사 인증이 가능하다. 영국은 경매사와 감정사의 정부차원의 제도는 없으나 자체적으로 만든 체계적인 교육으로 공신력이 있다. 두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과 비교하면 정부와 사회적 인식의 차원에서 경매인과 경매사,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해 고객에게 공신력을 제공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외 한국, 미국, 중국은 정부 차원의 전문 감정사의 자격 및 요건이 없다. 각 조직별 교육과

30) BSN Development Association, “区块链服务网络基础白皮书(英文版)(Blockchain based Service Network, Introductory White paper)” 2019.09;
“区块链服务网络基础白皮书发布, 区块链服务网络BSN即将全球商用,” 2020.04.

체계가 있을 뿐이다. 국내의 문화예술 디지털경매는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 명확한 법규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매사의 약관에 따라 법률적 해석을 적용하며, 추가적인 분쟁이 있을 시에는 해당 사례와 유사한 법률조항을 찾아, 처벌을 할 뿐이었다. 예를 들면 경매로 구매한 미술품 위작문제가 발생 했을 때, 관련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경매법의 미 제정으로 인하여, 사기죄나, 사서명 위조죄³¹⁾, 혹은 장물죄, 저작권표절 등 미술품 자체의 법적문제로 판단된다.

한국형 미술품 경매제도 도입방안연구(양현미, 2000)에서는 미술품 경매매제도 정착의 성패는 공신력 있는 경매회사의 설립 운영과 경매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미술시장의 제반 여건 조성이다.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후자로 첫째, 미술품 소장가 치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둘째, 미술품 감정의 공신력 제고 셋째, 미술품 보험제도 활성화 넷째, 미술품 담보대출 제도 활성화 다섯째, 미술품 관련세 제 정비 여섯째, 미술경매 전문 인력 양성 이라고 하였다.

31) 형법[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

<표-III-13> 5개국 비교표

국가	조직위상	법적근거	정부의 지원체계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감정사의 자격 및 요건X - 서울옥션과 케이옥션 양대 옥션을 기점으로 온라인 경매가 활성화되어있으나 한국화랑협회 등의 반발로 자체 화랑경매들이 생성 	명확한 경매에 관한 규정 없이 각 운영사의 약관을 기반으로 진행	경매	- 명확한 법률의 부재로 상황발생시 근접한 현행법으로 분쟁조정
			블록체인 기술	- 정부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투자
			가상화폐	- 규제대상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감정사의 자격 및 요건X - 세계최대 미술 경매회사인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문화예술품 경매의 기준 역할 	미국통일상법전(U niform Commercial Code)명시	경매	-
			블록체인 기술	- 기술활용을 위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법률제정 추진
			가상화폐	- 정부행정명령으로 관리감독방안 인프라법 시행예정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감정사 교육으로 공신력 있음 - 단 감정사 자격 요건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경매사 자격과 구분 되지않음 	미술전문가들의 자율적 감정제도	경매	-
			블록체인 기술	- 기술도입을 위한 국가적 도입 지원 및 각부처에서 테스트추진
			가상화폐	- 비트코인 화폐 인정(2014) - 정부주도가상화폐 허브구축시도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사 자격을 보유한 국가공무원만 진행 가능함 - 공공기관에 의한 감정사 인증제 있음 	국가인증 미술품 감정사 제도, 거래내역 신고제, Loi PACTE(기업성장법)	경매	-
			블록체인 기술	-정책기조의 변경으로 ICO적극지원
			가상화폐	- 정부주도로 가상화폐에 관련 사업에 관한 적극적 투자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감정사의 자격 및 요건X - 폴리옥션과 중국가디언옥션은 전 세계 거래규모로 2021년 3,4위 차지 	중화인민공화국경매법(中華人民共和國拍賣法)	경매	- 중국미술품과 문화재관리를 위한 다방면으로 법제화
			블록체인 기술	- 국가전략기술로 적극 투자 - NFT금융화 및 증권화역제
			가상화폐	- 불법 -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운영중

IV. 정책제언

1. 정책제언 제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디지털경매장 구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제도화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제 3의 신뢰할 수 있는 권위적 기구가 있어야한다.

디지털경매장에 관한 공공기관 법인성격의 단체나 기관을 설립하여야 하나, 문화예술의 특성상 정부주도의 관리와 운영보다는 팔길이 원칙에 따른 기구로써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나 제주도에서 지원을 하되, 민간이지만 공공에서 제도화 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기구는 공신력을 가진다. 경매거래는 결국 물건이나 서비스가 자본주의사회의 맞는 규제와 법률 내에서 유통거래가 진행되는 매매 거래이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정부의 관리와 운영에 따른 지원의 결과물의 요구에 거부감을 느끼고,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와 절차의 간소화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정부의 위치에서가 아닌, 또한 문화예술인의 위치에서가 아닌 독립된 운영권과 기관의 방향성에 간섭받지 않는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해당 기구의 운영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나 특례가 있는 자치도시기에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경매장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 하나의 법률적인 조치가 가능한 곳이다. 그 조례에 따라 지방정부 즉,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도화된 제3의 기구를 지원하고 법률을 제정한다. 그러므로 해당 공공기관은 법인격의 성격이기에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구가 된다. 예를 들면 도나 재단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도립미술관 등)같은 도의 부속기관에서 해당 기구를 조성하는 것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과 비슷하다. 하지만 현재의 민간위탁사업보다는 좀더 큰 권한과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운영과 관리를 온전히 해당기구에 위임하고 대신 모든 관리책임역시 해당기구가 져야한다. 제주도는 디지털경매장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중앙부처와는 다르게 독자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문화예술을 위한 정부의 관리와 간섭을 줄이는 초석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의 제4조 국가의 책무에 근거하여,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가는 행정적·제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5조에 근거하여 제주자치도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자치도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디지털경매장구성을 위하여, 제도적 장비를 마련 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경매에 관한 별도의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

디지털 경매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성격의 공신력 있는 단체, 재단, 행정 혹은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단순히 대한민국 내에서의 내수용 디지털 경매장이 아닌 전 세계미술시장을 대상으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처럼 세부적인 분류를 적용한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의 디지털경매플랫폼에 대한 법규를 별도로 제정하여 문화예술의 경매에 대한 안정화와 투명한 절차와 보증, 위작이나 가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경매장 구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행정차원에서 디지털경매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플랫폼 마련만이 아니라,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는 창작자가 있어야한다. 그 창작자를 위한 지원방안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작품을 제작하고 디지털경매장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가상화폐에 관한 지원여부 또한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각각 개별사업이던 규제자유특구사업과 제주 문화예술의 섬, 국제예술특구 조성사업 등은 한 곳에 어우러져, 복합사업으로서 새로이 연구되어야 한다.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연구 내용을 다시 되짚어 보면, 제2장에서는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미술 시장의 분류를 통한 창작자와 중개인, 구매자들의 순환구조와 각 시장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의 디지털 온라인플랫폼을 정의하였다. 또한 새롭게 대두되는 가상자산의 블록체인기술과 결합하여, 온오프라인 공간을 넘나드는 새로운 디지털 온라인마켓의 화폐를 구분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디지털경매를 정의하였다. 제주지역의 디지털경매장 구성에 따른 정책제언의 근거마련을 위해 디지털경매장의 위상과 법적근거, 정부의 지원체계를 연구하였으나,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들이 법적근거의 필요성과 법률안 제정을 시도하였지만 과거 정부에서 주도한 시장형성이나 제도마련 등의 방향이 미흡하고, 실익의 부재 및 국내 문화예술계의 자율성과 자율시장생태계의 흐름과 상충하여 아직까지는 법적 근거마련과 제도화과정에서 확연한 성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디지털 경매의 사례분석 과정을 걸쳐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프랑스·중국의 경매조직의 위상과 경매의 법적근거, 정부의 지원체계를 비교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2. 연구 시사점

앞서 논의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두 가지를 떠나서도 생활 속의 온라인가속화는 삶과 현실의 경계가 희미해진지 오래다. 세상의 모든 행위는 특정 한 나라, 한 공간에서 이루어 질 필요 없고, 언어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도 제약이 되지 못한다. 하물며 문화예술은 모든

것을 통하게 하였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은 이미 진행 중이며, 선진국을 비롯한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정책적 사업변화와 각 유관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실행 중이다. 아트바젤& UBS의 미술시장보고서의 발행인이자 예술품 경제학자인 클레어 맥앤드류(Clare McAndrew)는 변화하는 예술경매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고 적응하며 또한 혁신하는 자들이 앞서 나가게 될 것 이다” 라고 말하며 “온라인 시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³²⁾ 지금은 단순 온라인 시장의 진입이 예술품경매시장에서의 혁신이 아니라 새로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공간에서 디지털신기술을 활용한 예술품거래의 장을 구성하는 것이 앞서나가는 혁신이라 말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법규가 있는 도시이며, 국제자유도시로써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사업적 교류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경매장이 반드시 제주도에서 먼저 선행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문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제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디지털경매장을 구성하고 운영 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거나 지원을 하면 더욱 더 안정성을 가지고, 절차와 규정을 압도적인 규모로 세계의 이목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오프라인상의 지리적 환경적 공간과 예술인과 현대인의 휴식처로, 또는 새로운 도약의 도시로 관심을 받듯이 온라인상에서도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먼저 디지털경매장을 구성하고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바이어 또는 관광객이 유입을 하였을 때, 국내 타 지역어디보다도 더 나은 홍보효과를 보여줄 수 있으며, 더 유리한 정책 실행환경이 펼쳐질 것이라 자신한다. 제주지역의 규제자유특구사업과 제주 문화예술의 섬, 국제예술특구 조성사업이 어우러지면 창작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유통시장이 마련된다. 새로운 신기술을 위한 인프라가 조성이 되며, 이에 따른 기술개발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는 제주도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직업군과 도시를 대표하는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32) Robin Pogrebin, Scott Reyburn and Zachary Small, ‘Auction Houses Postpone Live Sales and Pivot to Online’, *New York Times*, 2020년 4월 19일
 “People who can change, adapt and innovate will be the ones best able to move forward.”
 “The online segment could be a big winner here.”

현재의 디지털 흐름에 편승하여 시간이 흐르는 대로 기술의 유입을 받기보다는 선도적인 역할을 제주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문화·예술이 제주도의 디지털경매장 또는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대중들이 쉽게 접하고, 경험하며, 거래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국내 자료

- 김봉수(2021), “2021년 한국미술시장 결산”, **2021 한국미술시장 결산 컨퍼런스 자료집**, 예술경영지원센터 2.
- 김인구(2000), 전자상거래, **두남**, 323~348.
- 김흥기(2018), “블록체인 기술의 법적쟁점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 113-137.
- 노종천(2013),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면책규정의 타당성 고찰”, **법학논총**, 30, 145~168.
- 박민혁, 김연희(018), “국내 미술품시장의 제도에 관한 연구”, **디지털예술공학멀티미디어논문지**, 5(2), 91-102.
- 박민혁, 김연희(2018), “한국 미술품 경매 시장 체계에 관한 연구”, **차세대융합정보 서비스학회**, 99.
- 성소라·롤프회퍼·스콧 맥러플린(2021), “NFT레볼루션 : 현실과 메타버스를 넘나드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탄생”, **더퀘스터**.
- 양현미(2000), “한국형 미술품 경매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유선애(2014), “The Next Generation,” **매거진 럭셔리**, 디자인하우스.
- 예술경영지원센터(2021), “20세기와 21세기 미술과 디자인에 강한 경매사,” **월간미술**.
- 이우채(2005), “마케팅적 성공요인 관점에서 본 미술품 전자상거래분석,”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4호, 61.
- 이유경(2021), “미술품경매회사와 배임죄,” **刑事政策(형사정책)**, 제22권 제2호(통권 제66호:2021.7), 37~38.
- 이재경(2021),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의 도입,” **입법과 정책** 13, no.1, 241-258
- 임성윤, 변승혁(2020), “해외 미술품 유통분쟁 해결제도를 통해 살펴본 국내 미술품 진본성 확보방안,” **중재연구**, 30(1), 199-215.
- 이승현(2017). “아카데미에서 시장으로의 제도적 변화 : 인상주의의 국제적 수용과

- 전문 화상의 역할.” **미술사학**, 34, 97-118.
- 정태희(2022), “국내 미술시장 트렌드 : 새로운 컬렉터의 등장과 미술시장의 변화”,
아트제주2022.
- 정형찬(1994), “경매 및 경쟁입찰에 관한 이론적고찰 :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12, 91-92.
- 조상인(2021), “미술 경매의 세계 - (2) 미술 경매 구조 그리고 현황“ **퍼블릭아트**.
- 차정미(2021), ”중국의 핵심기술 국가 전략화:블록체인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전문가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고운(2021), “미술경매의 세계 : (1) 미술경매, 미술의 가치는 누가 만드는가”,
퍼블릭아트
- 최민정(2017), “미술품 경매거래에 관한 법률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 46.
- 캐슬린 김(2018),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 미술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시 예상되는 부작용,” **미술세계**, 제 64권(통권 제398호), 59~60.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 “과학기술&ICT 정책 · 기술 동향, NO. 142, 30.
- 황종모, 한승우(2017), “해외 주요국 디지털화폐 관련 제도 및 시장현황,”
전자금융과 금융보안(제7호, 2017-01), 27.
- 허정(2020), “국제미술품 경매시장 동향과 중국 미술품 가격의 결정요인분석,”
한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

해외 자료

- Anders Petterson(2022), *Hiscox Online Art Trade Report 2022*, **Hiscox**, report
num.:part two
- 야창미술시장모니터링센터AMMA(2019), 中國文物藝術品拍賣25周年報告, 중국경매
업계 협회.

인터넷자료

- 국립중앙도서관(2015), 세계의 유명경매회사<소더비vs크리스티>, 국립중앙도서관
네이버블로그

- 강옥선(2018), 전통의 글로벌 경매사 소더비와 크리스티, 아트인포,
- 강종훈(2021), 서울옥션, 경매 방식 오픈마켓 '블랙랏' 열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1058800005>, 2022년 6월 7일 최종접속.
- 김보름(2021), 미술품 시가감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전망, 한국화랑협회,
<http://koreagalleries.or.kr/notice/?mod=document&uid=506>, 2022년 7월 13일 최종접속.
- 김유아(2021), 이광재의원, 가상자산으로 정치후원금 받고 NFT로 영수증 발행,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168400002>. 2022년 6월 1일 최종접속.
- 김정곤(2020), 감정·유통 시스템 개선목소리 크지만... 법안 자동폐기 수순,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O55KAXJ>, 2022년 6월 1일 최종접속.
- 김지우(2021), [블록체인 메카] 미국과 유럽의 블록체인 정책, 뉴스메카,
<http://www.newsmc.net/news/articleView.html?idxno=8256>, 2022년 6월 7일 최종접속.
- 김지훈(2014), 온라인쇼핑몰서 '피카소' 작품 파는 중국,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4052911061341805&VN>, 2022년 6월 27일 최종접속.
- 뉴스시스(2021), “낙찰총액 8조4천억” 크리스티, 2021년 경매 역대급 매출,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culture-life/art-gallery/2021/12/21/JMLQAPWZ7JBVLO3X3GEHFSG6O4/>, 2022년 6월 1일 최종접속.
- 단비뉴스(2022), 디지털 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 단비뉴스,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71>, 2022년 6월 8일 최종접속.
- 김지은(2017),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https://www.mcst.go.kr/attachFiles/viewer/skin/doc.html?fn=20171226140625697075794913_TCS_SCHMNG20171226021304499658.hwp&rs=/attachFiles/view

er/result/202207/, 2022년 7 4 최종접속.

박수호(2021), 독자와 함께하는 ‘매경FT’ 1호 주인공 나왔다, 매경이코노미,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23390/>. 2022년 6월 1일 최
종접속.

박수호, 반진욱(2021), NFT 5가지 궁금증…암호화폐와 다른 ‘디지털 정품인증서’답
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economy/view/2021/841954/>. 2022년 6
월 1일 최종접속.

박정수(2021), [83]메타버스(Metaverse)와 스마트팩토리,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OutLnkChk=Y&mediaCodeNo=257&news
Id=01207046629081064](https://www.edaily.co.kr/news/read?OutLnkChk=Y&mediaCodeNo=257&newsId=01207046629081064), 2022년 7월 4일 최종접속.

양정무(2012), [양정무 교수의 Money&Art](16) 미술작품 가격 결정 메커니즘…제작
비보다 창의성이 중요, 매경이코노미 제 1670호,
<https://www.mk.co.kr/economy/view/2012/523546/>, 2022년 7월 10일 최종접
속.

양현미(2017),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방향 연구." 예술경영연구,
67-101

원요환(2016), 수백억원 작품 팔리는 이곳 '누구나 방문 가능' 아나요, 매경프리미
엄, <https://www.mk.co.kr/premium/life/view/2016/08/15769/>, 2022년 6월 1일
최종접속.

이상미(2012), 파리 호텔 드루오(l'Hôtel Drouot) 경매장과 예술 경매사의 능력과
역할, 유로저널, http://eknews.net/x/column_extra72/407227, 2022년 6월
18일 최종접속.

이영란(2021), '빅3' 경매사 사상 최대매출(18.6조원), MZ컬렉터가 미술호황 이끌어,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222001192>, 2022년 6월 1
일 최종접속.

이용경(2021), [판결](단독) '미술품 경매' 낙찰 철회하면 30% 위약금 규정 "유효",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3097>, 2022년 6월
3일 최종접속.

이해봉(2019), 프랑스는 암호화폐 ICO를 이렇게 허가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59172>, 2022년 6월 1일 최종접속.

임유경(2022), 사상 첫 '국보' 경매...시민, NFT로 100억 모아 입찰한다, 지디넷코리아, <http://news.zumst.com/articles/73351783>, 2022년 6월 26일 최종접속.

장창(2022),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마케팅 !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테크42, <https://www.tech42.co.kr/%EB%94%94%EC%A7%80%ED%84%B8%EC%8B%9C%EB%8C%80%EC%9D%98-%EC%83%88%EB%A1%9C%EC%9A%B4-%EB%A7%88%EC%BC%80%ED%8C%85-%EB%94%94%EC%A7%80%ED%84%B8%ED%8A%B8%EB%9E%9C%EC%8A%A4-%ED%8F%AC%EB%A9%94%EC%9D%B4/>, 2022년 7월 4일 최종접속

장하나(2014), 앞다퉀 온라인경매 강화하는 미술품 경매시장, 연합뉴스, 2022년 5월 20일 최종접속.

정경민(2010), 세계 최대 경매회사 크리스티 CEO 돌면 “1위 비결? 뭐니뭐니 해도 사람”,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4270452#home>, 2022년 6월 1일 최종접속.

정다운, 반진욱(2022), 10대·40대를 왜 묶어? 닳은 듯 다른 MZ세대, 매경이코노미, <https://www.mk.co.kr/economy/view/2022/128454/>, 2022년 6월 2일 최종접속.

정다희(2022), 미술품 경매 시장 양분 '케이옥션'...낮은 유통물량·환매청구권 '눈길', 이코노믹리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61441>, 2022년 6월 6일 최종접속.

조상인(2016), 전속작가·전시공간 없으면 '화랑', '갤러리', 간판 못 단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L2L8C0RPA>, 2022년 6월 1일 최종접속.

최재훈(2022), 작가는 '내 작품', 판사는 '위작'... 샤넬백보다 더 헛갈리는 '미술품' 감정 [사모당], 조선일보, 2022년 7월 12일 최종접속.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4/14/4XXZCVAOMVEPHLY4P55DVS5KMI/,

한진형, 정연두, 장빙(2012), <인터뷰> 폴리옥션 "한국 골동품 시장에 첫발 내디더", 아주경제, <https://m.ajunews.com/amp/20120220000434>, 2022년 7월 4일 최종접속.

황두현(2022), 국내 최초 다오 '국보DAO'는 왜 실패했나... "생태계 부재가 원인", 한경코리아마켓,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3044746g>, 2022년 6월 7일 최종접속.

Alexandra Bruell(2021), How Christie's Is Pitching Its Expansion From Picassos to NFTs, THE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articles/how-christies-is-pitching-its-expansion-from-picassos-to-nfts-11637700438>, 2022년 6월 3일 최종접속.

Robin Pogrebin(2020), 'Art Galleries Respond to Virus Outbreak With Online Viewing Rooms',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3/16/arts/design/art-galleries-online-viewing-coronavirus.html?searchResultPosition=2>, 2022년 6월 13일 최종접속.

Robin Pogrebin, Scott Reyburn and Zachary Small(2020), 'Auction Houses Postpone Live Sales and Pivot to Onlin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4/19/arts/design/art-auction-houses-sales-coronavirus.html?searchResultPosition=1>, 2022년 6월 13일 최종접속.

인터넷 참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s://mcst.go.kr/kor/main.jsp> 2022년 6월 13일 최종접속. 2022년 6월 13일 최종접속.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2년 6월 13일 최종접속.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2022년 6월 1일 최종접속.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2022년 6월 1일 최종접속.

아트인포 홈페이지 <http://www.artinfo.kr/>, 2022년 6월 1일 최종접속.

AMMA News 홈페이지 <https://news.artron.net/>

Art price 홈페이지 <https://www.artprice.com/>, 2022년 6월 13일 최종접속.

artron 홈페이지 www.artron.net, 2022년 6월 13일 최종접속.

Baidu News 홈페이지 <https://baijiahao.baidu.com/>, 2022년 6월 13일 최종접속.

Bonhams 홈페이지 <https://www.bonhams.com/>, 2022년 6월 13일 최종접속.

Define Art 홈페이지 <https://define.one/>, 2022년 6월 2일 최종접속.

K-Auction 홈페이지 <http://www.k-auction.com/>, 2022년 3월 2일 최종접속.

legislation UK 홈페이지 <https://www.legislation.gov.uk/>, 2022년 6월 2일 최종접속.

POLY AUCTION 홈페이지 <http://www.polyauction.com>, 2022년 6월 22일
최종접속.

République française Légifrance 홈페이지 <https://www.legifrance.gouv.fr/>, 2022년
6월 2일 최종접속.

SHOPGOODWILL 홈페이지 <https://shopgoodwill.com/home>, 2022년 5월 2일
최종접속.

Sotheby's 홈페이지 <https://www.sothebys.com/>, 2022년 1월 12일 최종접속.

Sotheby's Institute of Art, <https://www.sothebysinstitute.com/>, 2022년 3월 24일
최종접속.

Sina Collection 홈페이지 <http://collection.sina.com.cn/>, 2022년 6월 2일 최종접속.

Seoul Auction 홈페이지 <https://www.seoulauction.com/>, 2022년 6월 1일 최종접속.
2022년 6월 8일 최종접속.

Wikipedia 웹페이지 <http://ko.wikipedia.org>, 2022년 5월 2일 최종접속.